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1호

2019.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TEL : 044-414-2114(代), www.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1호

2019.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 차

## 제1부

### OECD의 『Taxing Wages 2019』

#### I

##### 서 론 / 3

#### II

#####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4

1. 2018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 4
2. 2018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8
3.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 9
4.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추이(2000~2018년) ..... 11

#### III

##### 시사점 / 15

## 제2부

###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 I

##### 미국/캐나다 / 19

1. 미국 ..... 19
  - 가.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 19
  - 나. 2018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연차보고서 발간 ..... 22
  - 다. 특정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발표 ..... 25
  - 라. GILTI 관련 예외 규정 및 공제제한조치 발표 ..... 26
2. 캐나다 - 2019년 예산안 발표 ..... 27

II

유럽 / 32

1. 그리스 .....	32
가.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 도입안 최종 승인 .....	32
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 .....	33
2. 네덜란드 - 상품권(vouchers) 등 관련 VAT 제도 발표 .....	33
3. 노르웨이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제정안 공개 .....	35
4. 덴마크 .....	37
가. 2019 재정법 의결 .....	37
나. 은행의 혼성증권공제 허용 폐지 법안 공개 .....	37
5. 독일 .....	38
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38
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세법개정안 승인 .....	39
다. 해외에 지급한 온라인 광고대금 원천징수안 철회 .....	40
라. 부가가치세 개정안 제출 .....	41
6. 룩셈부르크 - 2019 예산안 국회 제출 .....	43
7. 벨기에 .....	43
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 의회 제출 .....	43
나. 조세회피방지법안 최종 승인 및 EU의 VAT 지침 이행 .....	45
다. 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시 과세율 개정 .....	46
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 대상 확대 .....	46
8. 스웨덴 - 2019년 세법 추가 개정 계획 발표 .....	48
9. 스위스 - 법인세법 개정안 'Tax Proposal 17' 최종 채택 .....	49
10. 스페인 .....	50
가. 2019년 예산법안 의회 제출 .....	50
나. 2019 주요 세무관리 계획 발표 .....	53

# 목 차

11. 아일랜드	55
가.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 발표	55
나. 과세당국에 최종수익자 등록정보 접근 권한 부여	56
12. 영국	57
가.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노력·결과 및 향후 계획 공개	57
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에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58
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 세제 보고서 공개	59
13. 오스트리아	61
가. 디지털서비스 과세 강화방안 발표	61
나. 디지털 과세 패키지 일부 규정 승인	62
다. 세법개혁안 공개	64
라. 조세사기방지 법안 공개	65
14. 이탈리아 - 2019년 예산법 발표	66
15. 체코	68
가. EU 조세회피방지지침 법안 확정	68
나. 디지털 용역과세안 공개	69
16. 포르투갈 - EU의 조세회피방지 지침 도입안 최종 승인	69
17. 프랑스	71
가.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및 대기업 2019년 법인세율 현행 유지안 의회 제출	71
나. 디지털 서비스세 개정안 제출	72
18. 핀란드	73
가. 2019 예산법안(Budget for 2019) 의결	73
나.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 제외 국가 리스트 발표	75
다. 연합정부의 조세개혁 계획 공개	76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79

1. 뉴질랜드 - Tax Working Group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내용 발표	79
2. 인도 - GST 개정안 발효	81
3. 일본	82
가. 2019년 세제개정대강 각의 결정	82
나.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	88
다. 세제개혁안 의회 심의 통과	89
4. 중국	91
가. 거주자 정의 규정 개정	91
나.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도입	91
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통지 발표	92
라.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면제금액 확대 발표	93
마. 증치세 세율 인하 발표	94
바. 미국산 자동차 및 예비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연기	95
사.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세율 인상 발표	96
아.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법인세 감면정책 발표	96
자. 제조업 지원을 위한 고정자산 가속상각 확대 시행	97
5. 싱가포르 - 「2019년도 예산안」 발표	97
6. 호주	99
가. 2019/20 예산안 발표	99
나. 급여신고제(Single Touch Payroll)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102
7. 홍콩 - 「2018/19 예산안」 발표	102

# 목 차

## IV

### 국제기구 / 105

1. OECD ..... 105
  - 가. 법인세 통계(Corporate Tax Statistics) 발표 ..... 105
  - 나. BEPS Action 6,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109
  - 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의문서 발표 ..... 112
  - 라. Taxing Wages 2019 보고서 출간 ..... 114
  - 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발표 ..... 116
  - 바. 디지털 경제에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보고서 발표 ..... 117
2. EU ..... 121
  - 가. 조세 비협조국가 명단(EU리스트) 업데이트 ..... 121
  - 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대비 완료 성명 발표 ..... 122
  - 다. EU 내 이익분할법 적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 123
  - 라. 조세 비협조 국가 명단(EU리스트) 조정 발표 ..... 126

## V

### 기타 / 127

1. 칠레 - 한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천징수규정 발표 ..... 127

## 제1부

〈표 II-1〉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	4
〈표 II-2〉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	5
〈표 II-3〉 2018년 주요국의 개인 조세부담률(소득세+사회보험료(근로자 분)) 비교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총급여 수입 대비 %) .....	6
〈표 II-4〉 2018년 주요국의 2자녀·외벌이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 비교 (평균급여수준 기준) .....	7
〈표 II-5〉 2018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9
〈표 II-6〉 2000~2018년도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	14

## 제2부

〈표 I-1〉 2018년 이전가격 사전협의 현황 .....	23
〈표 I-2〉 미국의 산업별 이전가격 사전협의 타결 현황 .....	23
〈표 I-3〉 2018년 이전가격 사전협의 소요기간 .....	25
〈표 II-1〉 스위스의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 TP 17 채택 연혁 .....	49
〈표 II-2〉 과세표준 구간 변경 내역 비교 .....	74
〈표 II-3〉 비EEA 지역 국가 중 정보교환 협정 체결국 .....	75
〈표 III-1〉 2019년 10월 이후 자가용 승용차 구입 시 적용되는 자동차세 .....	85
〈표 III-2〉 자동차 증량세 경감 비율 인하 및 대상 범위 조정 .....	86
〈표 III-3〉 승용차 에코카(자동차취득세) 감면 비율 .....	87
〈표 III-4〉 자가용 승용차 환경성능 비율 .....	87

# 표 목 차

〈표 III-5〉 자동차 중량세 양여 비율 .....	88
〈표 III-6〉 일본의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 .....	89
〈표 III-7〉 중국의 종합소득 세율 .....	92
〈표 III-8〉 중국의 증치세율 인하 .....	94
〈표 III-9〉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품목 .....	96
〈표 III-10〉 호주의 연도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계획 .....	100
〈표 III-11〉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액(단독소득가구 기준) .....	101
〈표 III-12〉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개정 .....	102
〈표 III-13〉 개정된 홍콩의 소득세율 .....	103
〈표 III-14〉 홍콩의 사업등록비와 사업등록부담금 .....	104
〈표 IV-1〉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일정 및 검토 국가 .....	111
〈표 IV-2〉 EU 이전가격 포럼 자료에 의한 이익분할법 배부 기준 및 적용 상황 .....	125

# 그림목차

## 제1부

[그림 II-1]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	6
[그림 II-2] 우리나라의 2018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조세격차 구성 현황 · 10	
[그림 II-3] 우리나라의 2018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 조세격차 구성 현황 · 11	
[그림 II-4] 2000~2018년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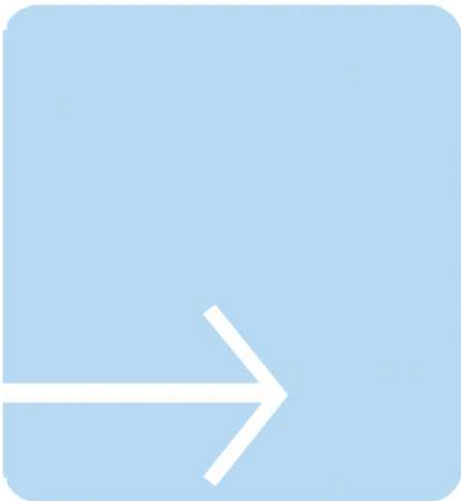
## 제2부

[그림 I-1] 미국의 국가별 이전가격 사전합의 타결 현황 .....	24
[그림 IV-1] 법인세 총수입 비중(총세수입 및 GDP 차지 비중) .....	106
[그림 IV-2] 이익분할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 .....	124



# 제1부

## OECD의 『Taxing Wages 2019』



본 챕터에서 제시하는 보고서는 2019년 6월 세정연구센터에서 「조세제정 Brief」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보고서로, 당시 조세 현안에 대한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 I 서론

■ OECD는 2019년 4월 11일 OECD 36개 회원국의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 *Taxing Wages 2019* 보고서를 출간함

▶ 동 보고서는 OECD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비교·분석함

- OECD 회원국의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조세부담 수준 및 추이를 가구형태 및 소득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함

▶ 다만, 가구형태별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제도만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산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비교 및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라면 간접세, 급여에 포함된 비과세소득, 기타 세액공제, 보조금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본고에서는 세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함

▶ 조세격차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동사용비용(labour costs) 중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이하 'SSC')의 합에서 현금 보조금을 뺀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조세격차(\%)} = \frac{\text{개인소득세} + \text{사회보험료(근로자분+고용주분)} - \text{현금 보조금}}{\text{노동사용비용(급여+지불급여세+사회보험료(고용주분))}} \times 100$$

- OECD에서는 조세격차를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사용비용과 근로자의 실소득(net take-home pay)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세부담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Taxing Wages 2019*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 현황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II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 1 2018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현황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조세격차는 36.1%로 최대 52.7%(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함(〈표 II-1〉 참조)
  - ▶ OECD 회원국 중 20개 국가의 조세격차가 OECD 평균치를 상회하며, OECD 평균치보다 작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6개국임
  - ▶ OECD 평균 조세격차는 전년 대비 평균 0.16%p 감소하였으며, 4년 연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전년 대비 조세격차가 증가한 국가는 22개국이며, 감소한 국가는 14개국임
  - ▶ 우리나라의 2018년 조세격차는 23%로 전년 대비 0.49%p 증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임(OECD 회원국 중 31위)

〈표 II-1〉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단위: %, %p)

국가	조세격차	전년 대비 증감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SSC	고용주SSC <sup>1)</sup>
독일	49.5	-0.09	0.06	-0.12	-0.04
프랑스	47.6	0.04	1.36	-1.87	0.55
이탈리아	47.9	0.20	0.20	0.00	0.00
일본	32.6	0.12	0.03	0.02	0.07
미국	29.6	-2.19	-2.14	0.00	-0.06
캐나다	30.7	0.11	0.21	-0.03	-0.07
영국	30.9	-0.11	-0.05	-0.02	-0.03
한국	23.0	0.49	0.34	0.08	0.07
OECD 평균	36.1	-0.16	-0.08	-0.02	-0.06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3

-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세격차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II-2〉, [그림 II-1] 참조)
-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평균 총노동사용비용은 5만 3,816달러이며, 조세격차 36.1% 중 소득세가 13.5%, 사회보험료가 22.6%를 차지함
  - ▶ 사회보험료 22.6%는 근로자 부담 8.2%와 고용주 부담 14.4%로, 근로자 부담보다 고용주 부담이 약 1.7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의 노동사용비용은 6만 2,391달러(14위)로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조세격차 23.0% 중 소득세가 5.8%, 사회보험료가 17.2%를 차지함
    - 우리나라 조세격차 중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3.5%보다 7.7%p 낮았는데, 이는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 우리나라 조세격차 중 사회보험료 비중은 근로자 부담 7.7%와 고용주 부담 9.5%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두 부담률 간 차이는 OECD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약 1.23배)

〈표 II-2〉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단위: %,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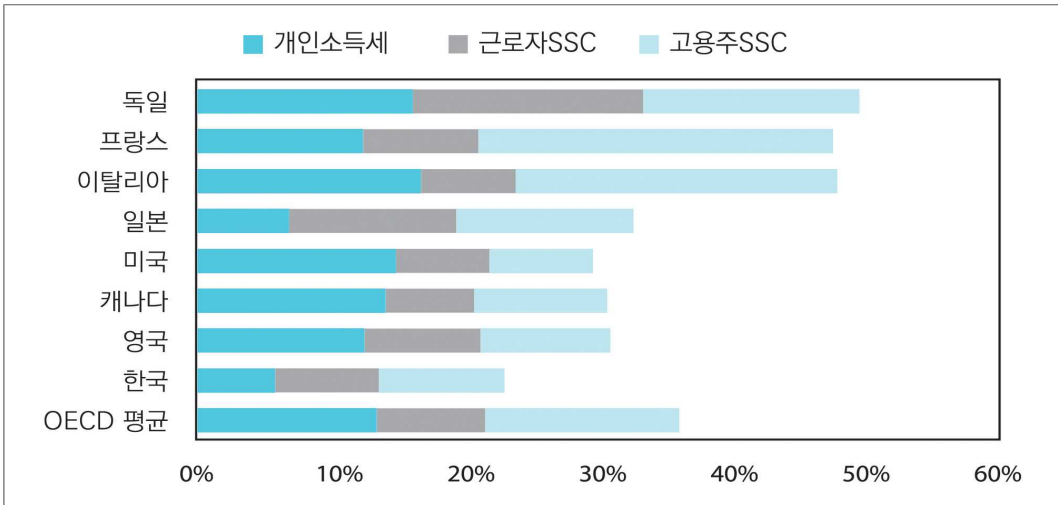
국가	조세격차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독일	49.5	16.0	17.3	16.2	80,284
프랑스	47.6	12.3	8.8	26.5	70,105
이탈리아	47.9	16.7	7.2	24.0	59,594
일본	32.6	6.8	12.5	13.3	59,776
미국	29.6	14.9	7.1	7.6	59,485
캐나다	30.7	14.1	6.6	10.0	47,476
영국	30.9	12.6	8.5	9.8	63,287
한국	23.0	5.8	7.7	9.5	62,391
OECD 평균	36.1	13.5	8.2	14.4	53,816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있는 국가의 경우 지불급여세 포함

2) 구매력 평가 기준 미국달러 환산(US dollars with equivalent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4

[그림 II-1] 2018년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 현황(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노동사용비용 대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5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독신가구 평균급여수준(average earning level)은 총급여액 4만 6,107달러이며, 개인 조세부담률은 25.5% 수준임(〈표 II-3〉 참조)
  - ▶ 25.5%의 개인 조세부담률은 소득세 15.7%와 사회보험료 9.8%(근로자 분)로 구성되어 있음
  - ▶ 2018년 우리나라의 평균급여수준은 5만 6,488달러<sup>1)</sup>로 OECD 평균을 상회하나(36개국 중 13위),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14.9%)을 보임
    - 특히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6.4%로 OECD 평균인 15.7%보다 9.3%p 낮은데, 이는 칠레(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표 II-3] 2018년 주요국의 개인 조세부담률(소득세+사회보험료(근로자 분)) 비교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 기준, 총급여 수입 대비 %)

국가	개인 조세부담률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총급여 <sup>1)</sup>
독일	39.7	19.1	20.6	67,254
프랑스	28.7	16.8	11.9	51,504
이탈리아	31.4	21.9	9.5	45,291
일본	22.3	7.9	14.5	51,849

(단위: %, 달러)

1) 구매력 평가 기준 미국달러로 환산한 수치이며, 한화로는 4,800만원 정도의 소득 수준임

〈표 11-3〉 의 계속

(단위: %, 달러)

국가	개인 조세부담률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총급여 <sup>1)</sup>
미국	23.8	16.1	7.7	54,951
캐나다	23.0	15.7	7.4	42,730
영국	23.4	14.0	9.4	57,095
한국	14.9	6.4	8.5	56,488
OECD 평균	25.5	15.7	9.8	46,107

주: 1) 구매력 평가 기준 미국달러 환산(US dollars with equivalent purchasing power)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27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6.6%로 동일 소득 수준의 독신가구보다 9.5%p 낮음(〈표 11-4〉 참조)

- ▶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세법상 혜택과 현금 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보다 높이는 효과를 가짐
- ▶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외벌이·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1%로 동일 소득 수준의 독신가구 조세격차 23%보다 2%p 낮음
  - 이는 OECD 회원국 가구별 차이인 9.5%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표 11-4〉 2018년 주요국의 2자녀·외벌이와 독신 가구의 조세격차 비교(평균급여수준 기준)

(단위: %, %p)

국가	가구별 조세격차			전년 대비 증감		
	2자녀·외벌이 (A)	독신 (B)	차이 (A)-(B)	2자녀·외벌이	독신	차이율
독일	34.4	49.5	-15.1	0.05	-0.09	-0.14
프랑스	39.4	47.6	-8.3	-0.07	0.04	0.11
이탈리아	39.1	47.9	-8.8	0.53	0.20	-0.33
일본	27.4	32.6	-5.2	0.17	0.12	-0.05
미국	18.5	29.6	-11.1	-2.41	-2.19	0.22
캐나다	11.7	30.7	-19.1	0.97	0.11	-0.86
영국	26.2	30.9	-4.7	-0.04	-0.11	-0.07
한국	21.0	23.0	-2.0	0.59	0.49	-0.10
OECD 평균	26.6	36.1	-9.5	0.00	-0.16	-0.17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3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2자녀·맞벌이·평균급여 167% 수준 가구의<sup>2)</sup> 조세격차는 30.8%로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에 비해 5.3%p 낮음
  - ▶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맞벌이·평균급여 1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7%로 독신·평균급여수준 가구의 조세격차(23%)에 비해 2.3%p가 낮으며, 이 역시 OECD 회원국 차이인 5.3%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2 2018년 OECD 회원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 OECD 회원국의 가구구성 형태<sup>3)</sup>별 조세격차 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II-5〉 참조)
  - ▶ 동일한 소득 수준이더라도 자녀가 없는 가구가 조세부담이 크며, 이러한 차이는 저소득가구에서 크게 나타남
    - 독신·무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32.1%로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의 조세격차 16%보다 약 2배 이상의 높은 조세부담을 보임
  - ▶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OECD 평균 조세격차는 16%로 가장 낮은 조세부담을 보이며, 독신·무자녀·평균급여 167% 수준인 가구는 40.4%로 가장 높은 조세부담을 보임
-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조세부담률 차이는 OECD 평균 및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표 II-5〉 참조)

2)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을 얻고 다른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을 얻는 가구를 말함

3) 결혼 유무, 자녀 수, 경제 상황에 따라 8가지 가구형태(household types)로 구분하여 비교함

1. 독신·무자녀·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2. 독신·무자녀·평균급여수준 가구
3. 독신·무자녀·평균급여의 167% 수준 가구
4. 한부모·2자녀·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5. 부부·2자녀·평균급여의 100% 수준 가구(외벌이)
6. 부부·2자녀·평균급여의 133% 수준(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 가구
7. 부부·2자녀·평균급여의 167% 수준(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 가구
8. 부부·무자녀·평균급여의 133% 수준(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 가구

- ▶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인 가구에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보다 낮으나, 취약가구로 분류할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인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치를 상회함

〈표 II-5〉 2018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

(단위: %)

국가	독신 무자녀 67%	독신 무자녀 100%	독신 무자녀 167%	한부모 2자녀 67%	부부 2자녀 100% (외별이)	부부 2자녀 133% <sup>1)</sup> (맞벌이)	부부 2자녀 167% <sup>2)</sup> (맞벌이)	부부 무자녀 133% <sup>3)</sup> (맞벌이)
독일	45.4	49.5	51.3	31.5	34.4	39.0	42.6	45.3
프랑스	43.1	47.6	54.1	25.2	39.4	36.9	42.4	42.2
이탈리아	40.9	47.9	54.0	25.9	39.1	38.6	41.7	42.9
일본	31.2	32.6	35.1	25.2	27.4	28.2	29.6	31.3
미국	27.6	29.6	34.1	9.6	18.5	22.0	23.9	27.5
캐나다	25.8	30.7	32.1	-15.2	11.7	19.9	24.1	27.6
영국	26.1	30.9	37.3	10.4	26.2	22.9	26.5	26.0
한국	19.8	23.0	25.4	17.6	21.0	20.4	20.7	21.6
OECD 평균	32.1	36.1	40.4	16.0	26.6	28.1	30.8	32.9

주: 1)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얻는 가구

2)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을 얻는 가구

3)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얻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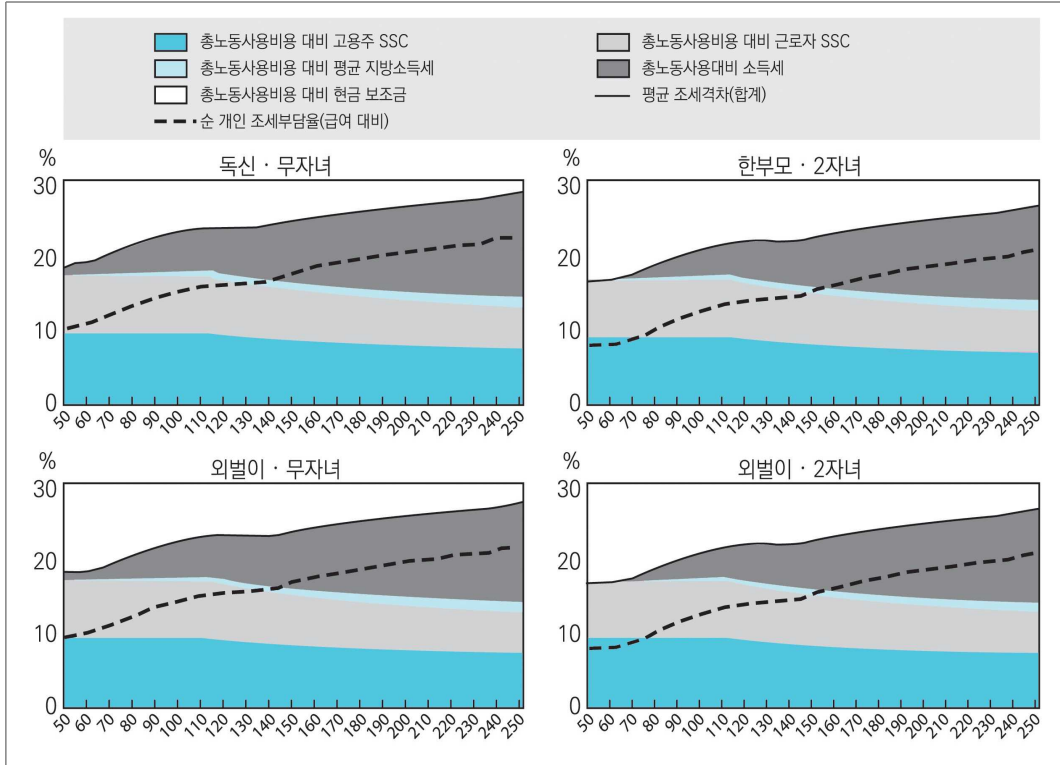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69

### 3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격차 현황

- 우리나라 모든 형태의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조세격차도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세격차 구성요소도 가구형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그림 II-2 참조)
  - ▶ 다만, 저소득 구간에서 사회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가 조세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면, 고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또한, 가구형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격차는 대부분 10% 후반에서 30% 미만에 분포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가구형태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11-2] 우리나라의 2018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평균 조세격차 구성 현황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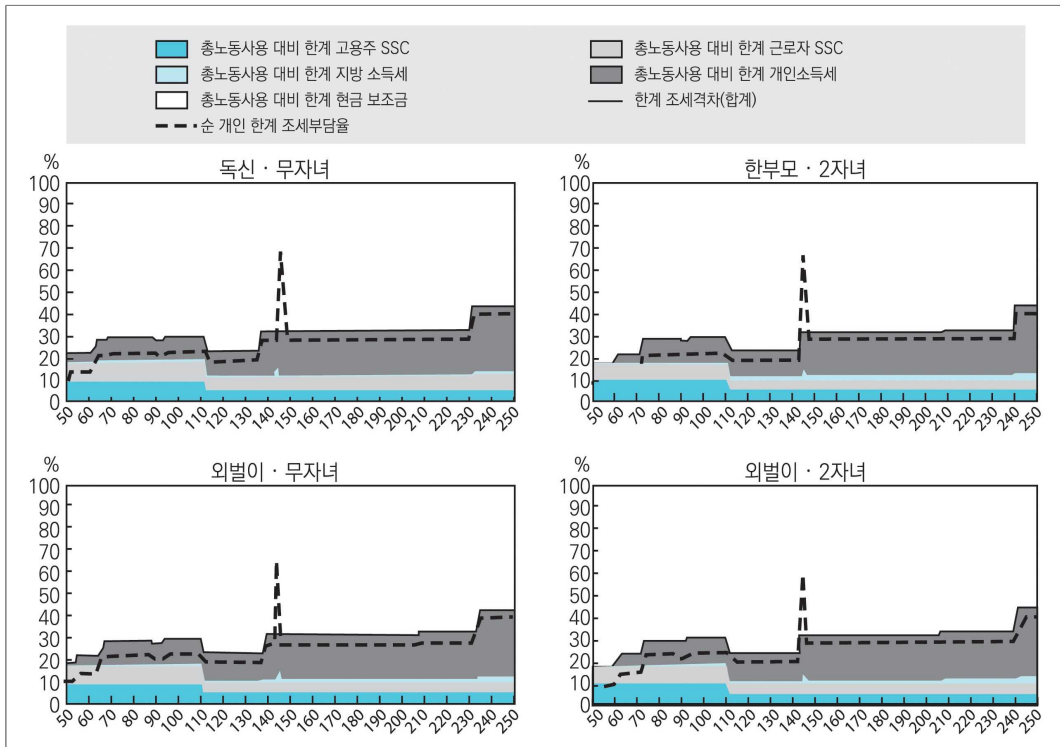
- 모든 형태의 가구에서 한계 조세격차<sup>4)</sup>는 소득구간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구 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 조세격차 그래프의 양상은 대체로 비슷(그림 11-3) 참조
  - ▶ 특정 소득구간별로 한계 조세격차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구간별로 단일의 사회보험료율과 소득세율을 과세하기 때문임
  -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서 일정 소득구간에서 한계 사회보험료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급여 110% 수준에서 사회보험료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
  - ▶ 여러 OECD 회원국에서 저소득구간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0% 이상의 높은 한계 조세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음

4) 한계 조세격차(marginal tax wedge)란, 소득자의 총급여가 1통화단위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조세부담(개인소득세 + 사회보험료(근로자분+고용주분) - 현금 보조금)을 말함

- 여러 OECD 회원국에서는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 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많기에, 저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혜택의 감소폭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그림 11-3] 우리나라의 2018년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에 따른 한계 조세격차 구성 현황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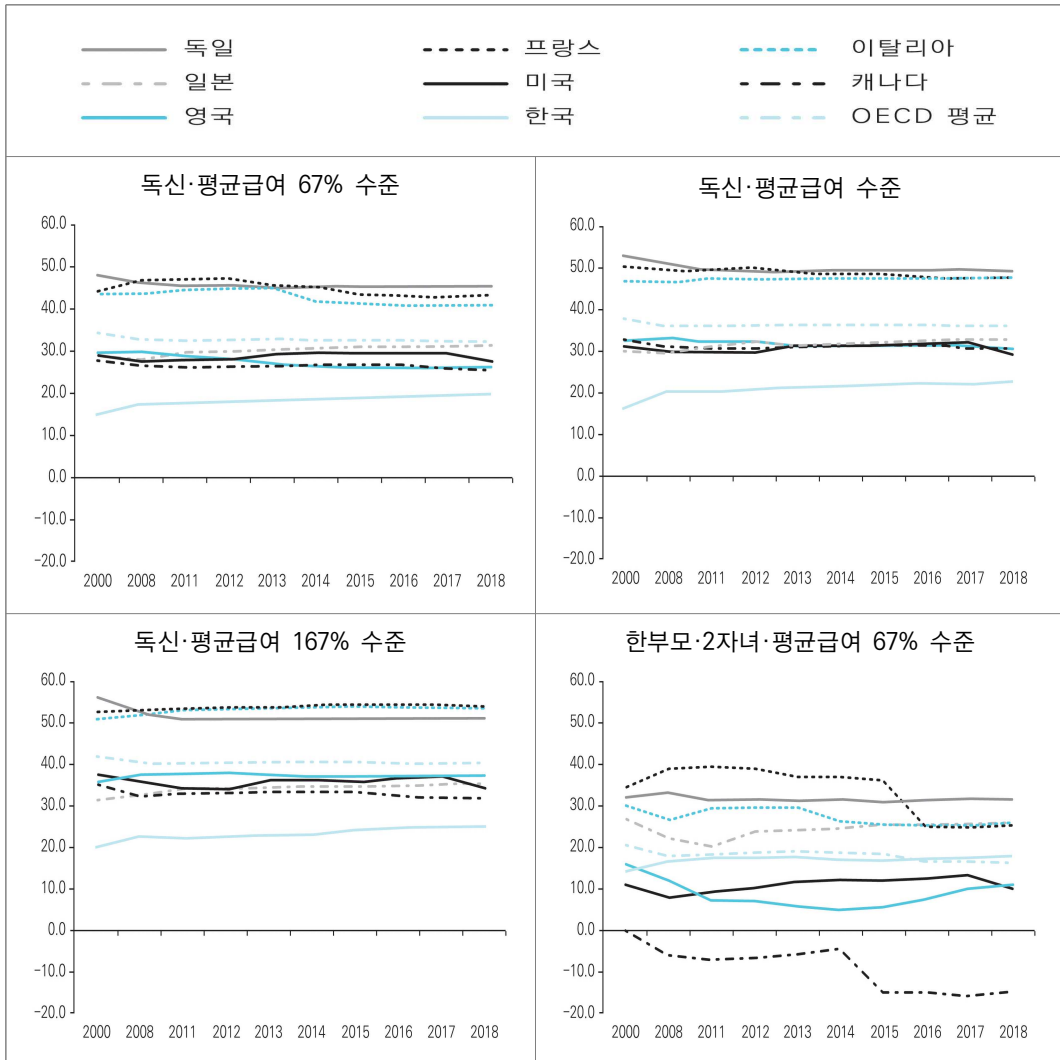
#### 4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 추이(2000~2018년)

- 2018년도 OECD 회원국의 조세격차는 2000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폭은 소득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그림 11-4 참조)
  - ▶ 독신·평균급여 1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00년도에 비해 1.3%p 감소하였으며,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4.1%p 감소함

- 우리나라 조세격차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형태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그림 II-4 참조)
- ▶ 다만, 취약층으로 볼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16년 이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해당 가구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조세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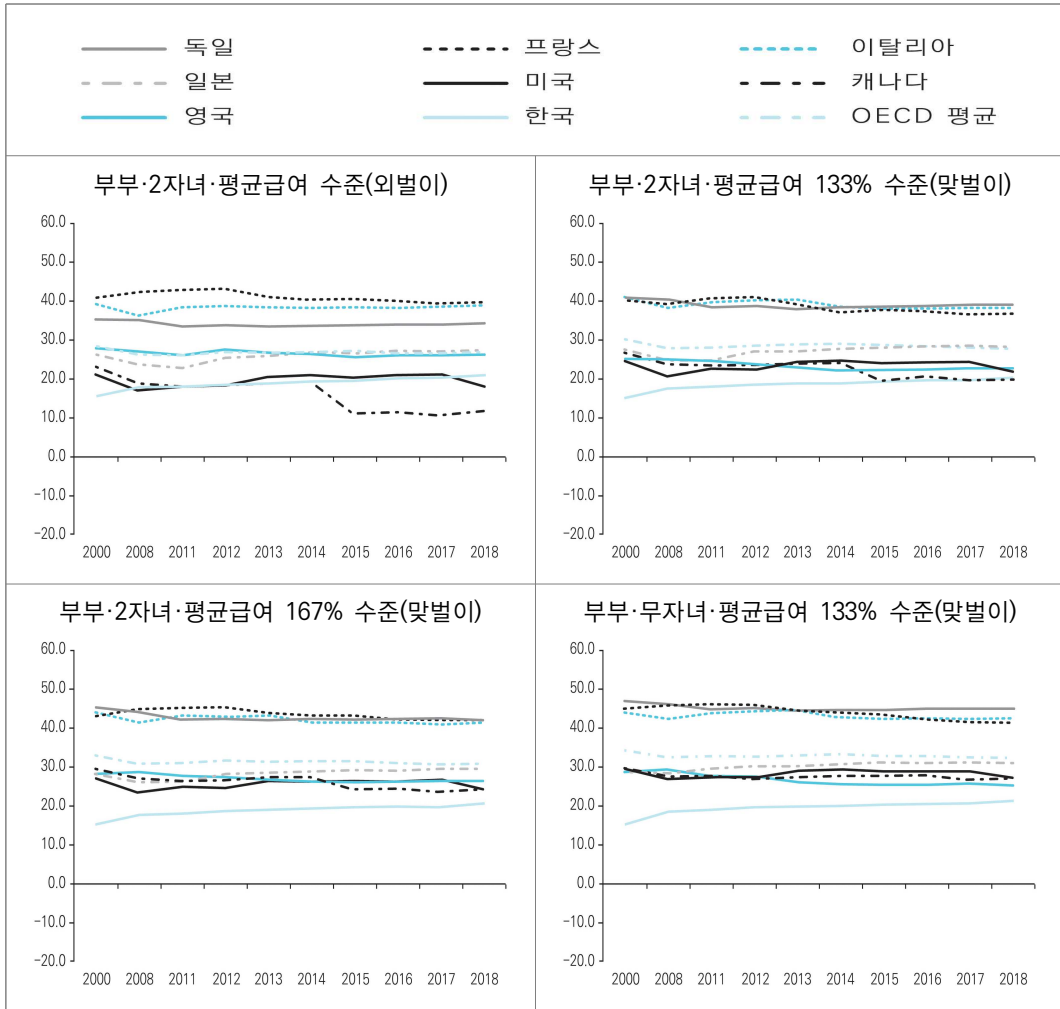
[그림 II-4] 2000~2018년도 주요국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단위: %)



[그림 11-4] 의 계속

(단위: %)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p. 154~1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OECD 회원국 중 일부의 가구형태에서 2018년도 조세격차가 2000년에 비해 5%p 이상 감소한 국가는 총 15개국임

▶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임

- 이 중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국가는 폴란드로, 그중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2000년도 조세격차는 29.8%였으나, 2018년도에는 -12%로 총 41%p 감소하였음

-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일부의 가구형태에서 2018년도 조세격차가 2000년도에 비해 5%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개국임
  - ▶ 우리나라, 체코,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터키임
    - 이 중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그중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는 2000년도 5.9%에서 2018년도에는 19.5%로 13.6%p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모든 가구형태에서 2000년도에 비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중 가장 크게 조세격차가 증가한 가구는 독신·평균급여 수준 가구로 6.6%p 증가함(〈표 II-6〉 참조)
  - ▶ 독신·평균급여 수준, 부부·2자녀·평균급여 수준(외별이), 부부·2자녀·평균급여 133% 수준, 부부·2자녀·평균급여 167% 수준, 부부·무자녀·평균급여 133% 수준의 가구에서 5%p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표 II-6〉 2000~2018년도 우리나라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추이

(단위: %, %p)

가구 형태	2000	200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변동 <sup>4)</sup>
독신 67%	15.0	17.4	17.8	18.0	18.4	18.5	18.7	19.2	19.3	19.8	△4.8
독신 100%	16.4	20.0	20.5	21.0	21.5	21.7	22.0	22.3	22.5	23.0	△6.6
독신 167%	20.5	22.6	22.2	22.6	23.0	23.5	24.2	24.6	25.0	25.4	△4.9
한부모 2자녀 67%	14.4	16.6	17.1	17.3	17.5	16.9	17.0	17.0	17.3	17.6	△3.2
부부 2자녀 100%	15.7	17.8	18.0	18.5	19.1	19.4	19.8	20.1	20.4	21.0	△5.3
부부 2자녀 133% <sup>1)</sup>	15.3	17.6	18.0	18.6	19.0	19.2	19.5	19.7	19.9	20.4	△5.1
부부 2자녀 167% <sup>2)</sup>	15.5	17.8	18.2	18.6	19.1	19.3	19.6	20.0	20.1	20.7	△5.2
부부 무자녀 133% <sup>3)</sup>	15.8	19.0	19.6	20.0	20.4	20.5	20.8	21.0	21.1	21.6	△5.8

주: 1) 맞벌이가구로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버는 가구

2) 맞벌이가구로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67% 수준을 버는 가구

3) 맞벌이가구로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 수준, 다른 한 배우자는 평균급여의 33% 수준을 버는 가구

4) 2000년도 대비 2018년도의 조세격차 변동을 의미

자료: OECD, *Taxing Wages 2019*, pp. 154~16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III 시사점

- 우리나라 급여소득자의 평균소득 수준은 5만 6,488달러로, OECD 회원국 중 중상위권 (36개국 중 13위)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세부담률은 23%(독신 기준)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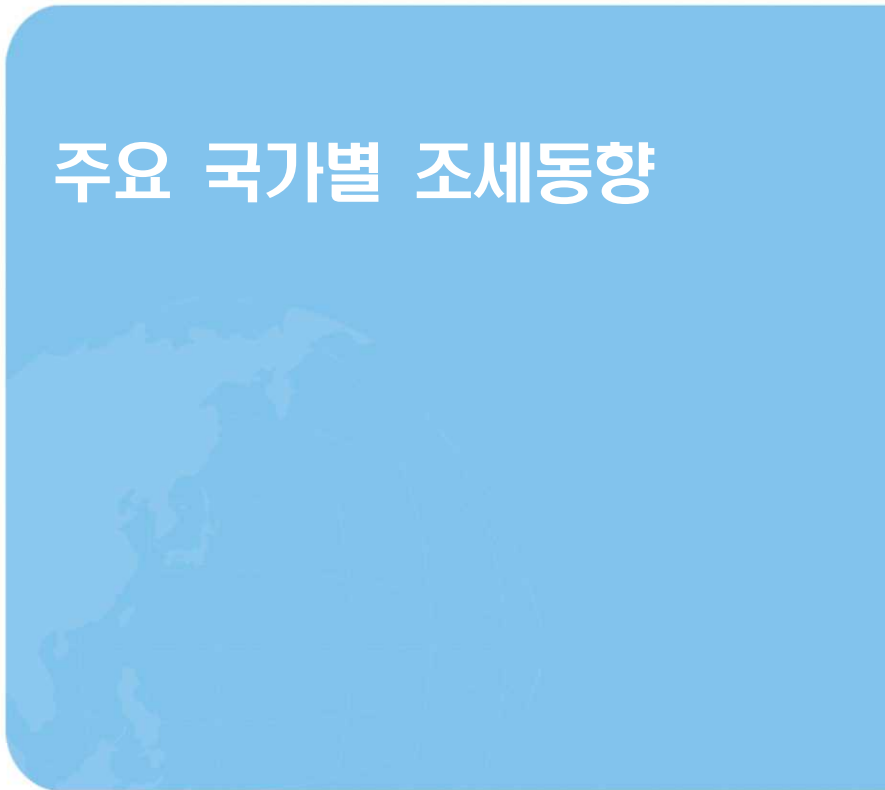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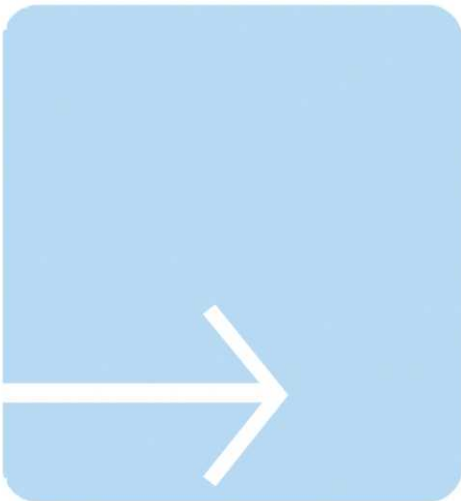
  - ▶ 특히, 소득세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임
- 또한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부양가족(자녀)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보고서에서 다룬 총 8개의 가구형태 중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한부모·2자녀·평균급여 67% 수준 가구의 조세격차만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동일 소득수준의 독신가구와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조세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 I 미국/캐나다

## 1 미국

### 가.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3회]

-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3월 11일 2020년 예산안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Promises Kept, Taxpayers First”을 의회에 제출함<sup>5)</sup>
  - ▶ 이번 예산안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 서부지역의 국경 강화, 국방 강화, 퇴역군인 지원, 미국 학생 및 직장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함<sup>6)</sup>
    - 정부지출은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정부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하는 등의 재정절감 노력을 통해 총 2조 7천억달러의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함
  - ▶ 본고에서는 예산안 내용 중 국세청에 대한 예산 증가 및 권한 확대 내용과 조세 관련 개정안 내용을 중점으로 기술함

#### 1) 국세청 예산 증가 및 권한 확대

- 예산안에서는 미 국세청에 향후 10년간 150억달러의 예산을 증가시킬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70억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함<sup>7)</sup>

5)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administration-presents-president-trumps-fiscal-year-2020-budget-request/>, 검색일자: 2019. 3. 31

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FISCAL YEAR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budget-fy2020.pdf>, 검색일자: 2019. 3. 31

7)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FISCAL YEAR 2020; Major Savings and Reforms,” p. 168,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9/03/msar-fy2020.pdf>, 검색일자: 2019. 3. 31

- ▶ 미 국세청이 납세자의 과세신고서 처리 및 환급 업무를 잘 이행하고, 국세행정의 전산화, 납세자에게 유용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국세청의 납세자 신고서 오류 수정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sup>8)</sup>

- ▶ 현행 규정에서는 단순 계산 실수, 납세자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납세자번호를 잘못 기입한 건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수정이 가능함
- ▶ 이번 예산안에서는 고용주의 근로소득 지급액 보고자료(W-2)와 제3자의 소득지급자료와 납세자의 소득 신고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평생 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금액을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2) 조세 관련 개정안<sup>9)</sup>

가) 세제 개편

□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단체(Scholarship-Granting Organizations)에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한 경우 연간 총 5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장학금 지급 비영리단체는 각 주정부에서 승인한 단체로 기부금 수령액을 ‘Career-Technical Dual Enrollment program’ 참여비용, 방과 후 과정 교육비용, 사립학교 교육비, 학교 교과과정에 없는 과목의 수강비용 등 기타 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는 단체여야 함
  - 각 주정부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단체의 기부금 수입 중 장학금 사용 비율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함

- ▶ 위 개정안은 자녀교육비의 지출에 있어 가구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해서도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 HSA) 납입액의 소득공제 허용을 제안함<sup>10)</sup>

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FISCAL YEAR 2020; Major Savings and Reforms,” pp. 169~170

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A budget for a Better America - Analytical Perspective,” 14. Governmental Receipts, 2019. 3. 11

10) · 메디케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의 의료비 보장 프로그램임  
· 건강저축계좌(HSA): 의료비 지출 대비 목적으로 개설하는 계좌로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해

- ▶ 현행 규정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의료비를 보장받는 자의 경우 건강저축계좌(HSA)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 위 개정안은 메디케어 수혜 대상인 노인 인구의 의료비 추가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전기차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에너지 전환시설 투자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비과세, 재생 에너지 장비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에너지투자세액공제, 주거용 에너지 효율 자산 구입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각종 에너지 관련 조세혜택의 폐지를 제안함
- ▶ 위의 조세혜택제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으나<sup>11)</sup> 미 정부 에너지부처의 '에너지효율성 및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프로그램(EERE)<sup>12)</sup>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기조의 일환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됨<sup>13)</sup>
  - ▶ 위의 에너지 관련 조세혜택 폐지에 대해 유류(oil), 가스, 석탄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함<sup>14)</sup>

#### 나) 세무행정 개선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전자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 기존에는 250명 이상의 근로자 급여지급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를 의무화 하던 것에서 10명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신고 시에도 전자신고가 의무화됨
- 근로장려금(ETC), 자녀장려금(CTC) 지급 시 또는 부양가족세액공제(ODTC)<sup>15)</sup>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할 것을 제안함

택을 부여하며, 향후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계좌 잔액 인출 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허용함

11) 전미재생에너지협회, <https://acore.org/acore-statement-on-the-trump-administrations-repeal-of-renewable-energy-incentives-and-cuts-to-doe-renewable-energy-programs-in-the-fy-2020-budget/>, 검색일자: 2019. 3. 31

12)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13) 미 하원,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president-trump-s-2020-budget-dangerous-exercise-ignoring-reality-and-threat>, 검색일자: 2019. 3. 31

14) 미 하원 발표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조세지출은 향후 10년간 180억달러가 감소된 반면, 오일, 가스·석탄 산업에 대한 280억달러 규모의 조세지출은 계속 유지됨. 미 하원, <https://budget.house.gov/publications/report/president-trump-s-2020-budget-dangerous-exercise-ignoring-reality-and-threat>, 검색일자: 2019. 3. 31

15) Other Dependents Tax Credit으로 2017년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인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 ▶ 현행 규정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부모의 사회보장번호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녀장려금 및 부양가족세액공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모가 사회보장번호가 없더라도 자녀가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경우 자녀장려금이 지급됨
-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부양가족세액공제 제도 간 법적 통일성을 갖추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조세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나. 2018년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연차보고서 발간

[조세동향 19-04호]

□ 미국 국세청은 2019년 3월 27일 ‘이전가격 사전합의 프로그램(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program: APMA program)’<sup>16)</sup>의 2018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함<sup>17)</sup>

-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이전가격 사전합의 담당 부서, 구성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제2장: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개괄적인 통계를 담고 있음
  - 제3장: 2018년에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상세 내용(이전가격 사전합의 대상 거래 유형, 이전가격 산정방법, 합의까지 소요기간 등)을 담고 있음
- ▶ 이전가격 사전합의 관련 연차보고서는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매년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전가격 사전합의 프로그램은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이전가격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1991년 처음 도입됨<sup>18)</sup>

- ▶ 납세자가 사전에 협의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였고, 해당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의 가격이라면 과세당국은 별다른 요청 없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여 납세자의 과세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음

16) 이전가격 사전합의 프로그램(APMA)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이전가격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사전에 협의하는 것임.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apma>, 검색일자: 2019. 4. 29

1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drop/a-19-03.pdf>, 검색일자: 2019. 4. 25

18) JOINT COMMITTEE ON TAXATION, “PRESENT LAW AND BACKGROUND RELATED TO POSSIBLE INCOME SHIFTING AND TRANSFER PRICING,” 2010, p. 34

- 미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현재 국세청 내 대기업·국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사전합의 담당부서는 77명으로 구성됨
  - ▶ 이전가격 사전합의 담당부서는 부서장 6명, 부서장을 감독하는 이사 3명, 경제학자 12명, 팀원 56명으로 구성됨
  
- 2018년 이전가격 사전합의 접수 건수는 203건, 타결 건수는 107건, 진행 건수는 458건으로 접수 건수 및 진행 건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타결 건수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표 1-1〉 2018년 이전가격 사전합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접수(filed)	101	203
타결(executed)	116	107
진행(pending)	386	458
취소(revoke or cancelled)	11	0
철회(withdraw)	8	21
갱신(renewals)	70	62
갱신진행(renewals pending)	164	195

자료: 미국 국세청, ANNOUNCEMENT AND REPORT CONCERNING ADVANCE PRICING AGREEMENTS, <https://www.irs.gov/pub/irs-drop/a-19-03.pdf>, 검색일자: 2019. 4. 25

- 2018년에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합의 총 107건 중 절반 이상은 일본, 캐나다와 타결된 것이며,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전체 타결 건수의 83%를 차지함

**〈표 1-2〉 미국의 산업별 이전가격 사전합의 타결 현황**

(단위: 건)

구분	타결 건수
제조업	48
도매·소매업	35
일반관리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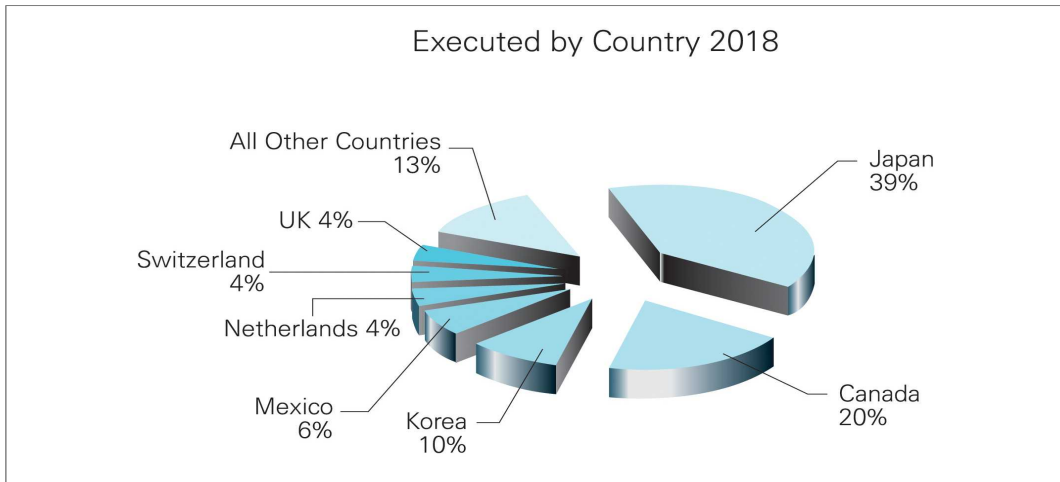
〈표 1-2〉 의 계속

(단위: 건)

구분	타결 건수
서비스업	7
금융·보험·부동산업	4
기타산업	5

자료: 미국 국세청, ANNOUNCEMENT AND REPORT CONCERNING ADVANCE PRICING AGREEMENTS, p. 6, <https://www.irs.gov/pub/irs-drop/a-19-03.pdf>, 검색일자: 2019. 4. 25

〔그림 1-1〕 미국의 국가별 이진가격 사전합의 타결 현황



자료: 미국 국세청, ANNOUNCEMENT AND REPORT CONCERNING ADVANCE PRICING AGREEMENTS, p. 4, <https://www.irs.gov/pub/irs-drop/a-19-03.pdf>, 검색일자: 2019. 4. 25

- 거래당사자별 이진가격 사전합의를 살펴보면 전체 타결 건수 중 절반 이상이 해외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전체 타결 건수 중 약 44%가 유형자산 판매거래에서 발생함
  - ▶ 해외 모회사-미국 자회사 간 거래 외에 미국 모회사-해외 자회사 간 거래가 22%, 계열사 간 거래가 24%의 비중을 차지함
  - ▶ 유형자산 판매거래 외 용역거래와 관련한 이진가격 사전합의 건수는 전체 건수의 35%를 무형자산거래의 경우 전체 건수에서 21%를 차지함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거래의 이진가격 산정 시 86%의 거래에서 비교 가능 이익방법

(comparable profits method)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영업이익률을 비교인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타결되기까지 일방 APA의 경우 평균 33.4개월(약 2년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쌍방 APA의 경우 평균 45.6개월(약 3년 9개월)이 소요됨
  - ▶ 이전가격 사전합의 거래가 신규인 경우와 갱신인 경우 약 4개월의 시차가 존재하였으며, 신규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4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2018년 이전가격 사전협의 소요기간

(단위: 개월)

구분	일방 APA		쌍방 APA		전체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신규	35.4	30.7	47.8	43.2	45.5	41.7
갱신	32.4	36.3	43.9	42.0	40.8	40.1
전체	33.4	33.5	45.6	42.1	42.8	40.2

자료: 미국 국세청, ANNOUNCEMENT AND REPORT CONCERNING ADVANCE PRICING AGREEMENTS, p. 12, <https://www.irs.gov/pub/irs-drop/a-19-03.pdf>, 검색일자: 2019. 4. 25

#### 다. 특정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발표

[조세동향 19-05호]

- 미국 무역 대표부는 2019년 5월 9일부터 2천억달러 가치의 특정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발표함<sup>19)</sup>
  - ▶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중국 수입품을 선정할 것을 요청하였고,<sup>20)</sup> 이후 2018년 7월 6일부터는 818개의 품목(이하 'List 1 품목')에 대해 2018년 8월 23일부터는 956개의 중국 수입품(이하 'List 2 품목')에 대해 25% 세율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음<sup>21)</sup>

19)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announces-increase-of-tariffs-on-list-3-goods-imported-from-china>, 검색일자: 2019. 5. 23  
 20) 과거 미국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6호, 2018 참조  
 21)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tr-publishes-fourth-round-of-exclusions-for>

- ▶ 이번 발표는 2019년 5월 9일부터 2천억달러 규모의 총 5,745개 수입품목(이하 'List 3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한 것임
  -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List 3 품목'에는 미국 통합관세체계(HTSUS)의 챗터 1~80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가방, 모자, 가구, 컴퓨터 부품, 음식 등 소비자 물품이 주로 포함됨
  - 단, 의약품(챗터 30), 의류 및 신발(챗터 61~64)은 추가 관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2019년 5월 9일 기존에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List 1 품목' 중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을 발표함<sup>22)</sup>
  - ▶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선박추진기(Marine propulsion engines), 22.38kw 미만의 선외기 모터(Outboard motors), 지게차(fork-lift truck) 및 기타 들어 올리는 장치가 있는 중장비, 감압밸브 및 자동온도 조절밸브를 포함한 파이프, 컨베이어 등이 있음<sup>23)</sup>

#### 라. GILTI 관련 예외 규정 및 공제제한조치 발표

[조세동향 19-06호]

- 2019년 6월 14일 미국 국세청은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만들어진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 소득'(이하 GILTI) 규정과 관련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함<sup>24)</sup>
  - ▶ GILTI 규정은 미국의 무형자산을 통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이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13.125% 이하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10.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함
  - ▶ 이번 조치는 GILTI 적용 관련 예외 규정을 비롯하여, 국외원천배당과 관련한 세금 공제를 제한하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chinese-origin-products-issues-initial-denials-for-next-set-of-product-requests, 검색일자: 2019. 5. 23

22)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tr-publishes-fourth-round-of-exclusions-for-chinese-origin-products-issues-initial-denials-for-next-set-of-product-requests>, 검색일자: 2019. 5. 23

23)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든 품목은 EY에서 발표한 자료 참조.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tr-publishes-fourth-round-of-exclusions-for-chinese-origin-products-issues-initial-denials-for-next-set-of-product-requests>

24) U.S. Multinationals Get High-Tax Exclusion, Anti-Abuse Rules, Bloomberg Law: Tax(June 20, 2019)

- GILTI 대상 소득 설정 시 section 954(b)(4)<sup>25)</sup>의 규정을 적용시켜,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이 내국세법 제11조가 명시하는 최대 세율의 90% 이상임을 인정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sup>26)</sup>
  - ▶ 국외 소득에 대해 13.125%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0.5%의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등 GILTI 규정의 한계가 드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표된 조치임
  - ▶ CFC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 주주가 5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소득에 적용됨
  
- 국외기업 주식을 보유한 미국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감세혜택을 제한함<sup>27)</sup>
  - ▶ 외국 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국내 법인은 해당 외국 기업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에 대해 100%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공제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규제 투자회사가 아닌 C-corporation에만 적용됨
  - ▶ 회계연도와 GILTI 대상 소득 측정 발표일을 불일치시키거나, 소유권 변경 등을 통해 GILTI 적용 소득에 대해 100% 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부정 적용을 방지하는 임시 규정을 발효시킴<sup>28)</sup>

## 2 캐나다 - 2019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9-03호]

- 캐나다 재무부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예산안 ‘중산층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를 발표함<sup>29)</sup>
  - ▶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지원, 기반시설 및 대체에너지 투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캐나다 국민의 건강·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25)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정

26) IRS Expands High-Tax Exclusion Under Global Minimum Tax, Bloomberg Law: Tax(June 20, 2019)

27) Anti-Abuse Rules Limit Tax Deduction on Foreign-Source Dividends, Bloomberg Law: Tax(June 20, 2019)

28) 미국 연방정부 공보, <https://federalregister.gov/d/2019-12442>, 검색일자: 2019. 7. 1

29) 캐나다 재무부,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 <https://www.budget.gc.ca/2019/docs/plan/toc-tdm-en.html>, 검색일자: 2019. 4. 1

- ▶ 예산안에서 제안된 세제개편안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예산안 발표일을 시행일로 함

### 1) 개인소득세<sup>30)</sup>

□ 스톡옵션 수령액이 큰 대기업 직원의 경우, 스톡옵션 수령액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에서는 스톡옵션 수령 소득에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정상 소득 세율에서 50% 경감된 세율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이 적용됨<sup>31)</sup>
- ▶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신생기업, 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통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공정성을 해침<sup>32)</sup>
- ▶ 대기업 직원의 스톡옵션 과세 규정은 연간 20만캐나다달러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 초과 시 세제혜택을 배제하는 미국 규정에 맞춰 개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은 2019년 여름 이전에 발표할 계획임

□ 개인 납세자가 직무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지출한 교육비의 50%만큼 세액공제하는 'Canada Training Credit'의 신설을 제안함

- ▶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교육비 지출금액의 50%만큼 연간 250캐나다달러를 한도(평생 한도 5천캐나다달러)로 공제가 가능함
- ▶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비용은 직무 관련 교육비, 등록비, 자격증 발급비, 시험비가 포함됨
- ▶ 자격 요건은 캐나다 거주자이며, 2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net earnings)이 1만캐나다달러 이상이고, 연간 순소득(net income)이 상위 3번째 구간의 기준 금액(2019년 기준 14만 7,667캐나다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저축계좌(RRSP)<sup>33)</sup> 잔액 인출 시, 비과세를 허용하는 인출금액 한도를 인상할 것을 제안함

30)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Canada Budget 2019 tabled(20 Mar. 2019), News IBFD에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함

31) 캐나다 재무부,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 pp. 202~203

32) 캐나다 재무부,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BUDGET 2019*, pp. 203~204

33)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 기존에는 2만 5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퇴직연금계좌 잔액의 비과세 인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이를 3만 5천캐나다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 인출한 금액은 인출연도 다음 해부터 15년에 걸쳐 다시 퇴직연금 납입계좌에 납입해야 함
- 임신 관련 의료비(fertility-related medical expense)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임
- ▶ 난임부부, 동성부부, 비혼모 등 시험관아기 시술과 같은 생물학적 시술방법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 ‘임신 및 출산 보조를 위한 법령(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캐나다 보건국에서 검토할 예정임
- 납세자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에 기부 또는 판매하면 세액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이때 기부하는 자산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중 ‘국가적 중요성 기준(national importance)’을 삭제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부자산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적 중요성(outstanding significance), 국가적 중요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문화적 중요성은 캐나다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미학적 가치가 있는지, 미술 또는 과학 분야 연구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국가적 중요성은 국가유산의 손실 초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임
  - ▶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부연도의 납부세액을 면제하거나, 해당 자산을 판매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기부자산의 공정가치를 기반으로 면제함
  - ▶ 최근 판결에서 국가적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부자산이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세액감면 혜택을 배제한 바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 2) 법인소득세

- 농·어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를 제안함

-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의 사업소득은 5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법인세 경감세율인 9%가 적용됨<sup>34)</sup>
  - ▶ 예외 규정을 두어 CCPC의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다른 CCPC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농·어업 협동조합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른 CCPC나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도 경감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연구·개발비용 공제한도를 감소시키는 규정 중 '과세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연구개발비용의 15%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경우 연구개발비용의 30%를 300만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함
  - ▶ 예외 규정을 두어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의 작년 과세소득과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가 감소되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과세소득에 따라 공제한도를 감소시키는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신문사(journalism)를 지원하기 위해 ① 신문사를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기관으로 지정, ② 신문사의 뉴스실 직원에 지급한 급여액의 25%만큼 세액공제 허용, ③ 개인 납세자의 디지털뉴스 구독비용에 대해 15%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함
- ▶ 위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문사는 방송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대중의 관심사 및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생성하는 곳으로 2명 이상의 정규직 기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캐나다 거주법인으로 대표와 이사의 75%는 캐나다 시민이어야 함
    - 특정 산업, 스포츠, 오락, 연예 등 분야가 한정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제외됨
- 신문사 뉴스실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이며, 직원 1명당 급여 5만 5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즉, 직원 1명당 최대 1만 3,750캐나다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공제된 세액공제액은 환급됨

34) 일반 법인세율은 15%임

-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됨
- ▶ 개인의 디지털뉴스 구독비용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총구독비용 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함
- 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차량 구입비용에 대해 전액 감가상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 위의 개정안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3년 이후부터는 감가상각률을 75%, 2026년 이후부터는 55%로 감소시켜 2028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임
  - ▶ 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제는 차량당 5만 5천캐나다달러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며, 기준 금액은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임

### 3) 소비세

- 생물학적 제제, 의료장치, 건강관리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 난자(human ova), 시험관 배아(in vitro embryos)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는 정형외과용 장비, 압박스타킹 등의 의료용 장비에 경감세율을 적용함
  - ▶ 질병 치료 및 관리가 종합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전체에 대해서도 경감세율을 적용함

### 4) 납세순응

- 캐나다 국세청에 조세회피 위험 지역에 소재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팀 신설 목적으로 5천만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함
  - ▶ 부동산 세무조사팀은 부동산을 판매하고 소득 전액을 신고했는지 여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양도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임
  - ▶ 세무조사팀 신설을 통해 향후 5년간 6,800만 캐나다달러의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 II 유럽

### 1 그리스

#### 가.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 도입안 최종 승인

[조세동향 19-06호]

- 그리스 의회는 2019년 4월 24일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을 전치하고 확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Law 4607/2019를 발표함<sup>35)</sup>
  - ▶ ATAD 규정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침이나, 그리스의 Law 4607은 개인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함
  - ▶ 본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Law 4607은 기업의 초과 차입비용이 300만유로 미만일 경우 ATAD의 이자공제한도규정(IBR)을 적용받지 않게 하는 안전 조항을 포함함
  - ▶ ATAD의 IBR은 이자, 세금, 감가 및 감채 상각 이전의 초과 차입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기업소득의 30%로 제한하고 있음
    - 여기에서 초과 차입비용이란 과세 소득 및 이와 동등한 소득을 초과하는 기업의 차입액으로 정의됨
-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면세 적용 법인의 배당 소득을 주주 혹은 본사에 재귀속시켜 그리스의 소득세법을 따르게 하는 CFC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 CFC의 이익에 대한 권리, 투표권 혹은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주주 또는 해당 CFC의 소유권을 25% 보유한 협력 기업

35) Tax Notes International, *Greece Transpose, Expands on Anti-Tax-Avoidance Directive*, May 20, 2019

- ▶ CFC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그리스 세법 적용 시 과세되는 금액의 50% 미만인 법인
- ▶ 세전 순이익의 30% 이상이 지정된 소극적 소득원(passive income source)<sup>36)</sup>으로부터 발생한 외국법인 또는 고정사업장

## 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

[조세동향 19-06호]

- 그리스 국세청은 2019년 5월 20일부터 Circular E.2083을 발효시켜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함<sup>37)</sup>
  - ▶ 식음료 서비스 및 특정 기초 품목에 대해 기존 세율 24%에서 13%의 경감세율을 적용함<sup>38)</sup>
    - 올리브 오일, 고기 및 생선, 코코아, 식초 및 기타 표준화된 식료품
    -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의 음식 서비스
    - 커피 및 주류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음료수는 제외되어, 24%의 세율을 유지함
  - ▶ 전기 및 가스에 대해 개인과 기업 모두 기존 세율 13%에서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2 네덜란드 - 상품권(vouchers) 등 관련 VAT 제도 발표

[조세동향 19-01호]

- 2018년 12월 21일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품권(vouchers), 쿠폰(coupons), 우표(stamps)에 관한 VAT 제도를 발표함<sup>39)</sup>

36) 금융 자산, 로열티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한 소득, 배당 및 주식 처분에 의한 소득, 금융리스 수입, 보험·은행 및 기타 금융활동으로 인한 수입, 협력 기업에서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으로부터 판매 및 서비스 수입을 얻는 인보이스 발행 회사의 수입 등

37) Greece Application of reduced VAT rates to supply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 circular released(3 June 2019), News IBFD

38) <http://www.ekathimerini.com/240431/article/ekathimerini/business/reduced-tax-rates-to-apply-from-may-20>, 검색일자: 2019. 7. 1

39) Netherlands-Decree on VAT treatment of vouchers, coupons and stamps published(27, Dec 2018), News IBFD

- ▶ 2016년 6월 27일 EU에서 채택한 상품권 부가세지침<sup>40)</sup>에 따른 것으로 EU 회원국은 2019년부터 동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 동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상품권 등에 대해서 적용됨

□ 상품권, 쿠폰, 우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음

- ▶ 상품권은 종이와 전자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단일 또는 복수 목적을 가질 수 있음
  - 단일 목적 상품권(Single-purpose vouchers)의 처리는 단일 목적 상품권 교환으로 인해 이전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과세방법과 동일하나, 다목적 상품권(Multi-purpose vouchers)의 처리는 교환으로 인해 이전하는 대상의 시점과 장소 등이 불명확하기에 관련 VAT상 처리도 명확하지 않음
- ▶ 종이 또는 전자적 할인쿠폰은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쿠폰이 교환될 때 소비자는 대가의 일부분을 지불하여야 하며, 쿠폰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 우표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급될 때 고객에게 대가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말함

□ 단일 목적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VAT 적용 대상 거래가 됨

- ▶ 단일 목적 상품권의 발행 시, 발행자(혹은 공급자)는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 부가세 과세 대상 금액은 상품권 액면가액에서 VAT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상품권의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교환되는 경우, 납부된 VAT는 조정되지 않음
- ▶ 상품권이 발행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교환된다면, 제3자는 상품권 발행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품권 발행자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함

□ 다목적 상품권의 양도는 VAT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님

- ▶ 다목적 상품권의 운송, 관리, 포장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VAT 대상

40)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6/112/EC as regards the treatment of vouchers

거래이며, 이 경우 오직 과세 대상 서비스 또는 전체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 다목적 상품권을 교환함으로써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이 역시 VAT 과세 대상임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고 2019년 1월 1일 현재 미사용된 상품권에 대해 과도기적 규정(transitional rules)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음<sup>41)</sup>

- ▶ 단일 목적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미사용 금액에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2019년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1분기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2019년 1월 1일 발행된 것으로 간주함
- ▶ 다목적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교환 또는 사용 시점에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함

□ 우표의 경우, 고객은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우표의 발행자로 하여금 VAT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할인쿠폰의 발행자는 쿠폰 대가에 대해 VAT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할인쿠폰과 함께 지불한 추가금액은 VAT 과세 대상임

### 3 노르웨이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제정안 공개

[조세동향 19-04호]

□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2019년 4월 10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제정하는 법안을 공개함<sup>42)</sup>

- ▶ 납세자의 법적 확실성을 도모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면서 세금부담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제안함

41) 의무규정은 아님. Meijburg & Co, Tax Lawyers, <https://meijburg.com/news/as-of-january-1-2019-new-vat-rules-for-vouchers-stamps-and-tokens>, 검색일자: 2019. 1. 28

42) Regjeringen.no,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prop.-98-l-20182019/id2640864/sec1>, 검색일자: 2019. 4. 29

- 노르웨이에서는 기존에 판례 및 법적 이론을 통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어 왔으나 입법을 통해 법적 형태를 갖추게 됨
  - ▶ 이 법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안됨
- 입법안의 조세회피방지규정에서 의도 기준과 남용 기준 두 가지의 적용 기준은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유지함<sup>43)</sup>
- ▶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 요건은 의도 기준과 남용 기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의도 기준은 세제혜택의 존재와 거래가 이를 주된 의도로 한 것인지 여부이며, 남용 기준은 국내 세법규정의 의도와는 다르게 형성된 세제혜택을 발생시키는 남용된 거래의 실제 결과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따름
- 다만, 세부적인 적용에 있어 기존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세 가지 차이점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강화함<sup>44)</sup>
- ▶ 상업적 목적의 국외조세 절감은 기존에 상업적 요인으로 남용 기준 평가에서 인정되었으나 이번 입법안에서는 제외됨
  - ▶ 세제혜택의 주된 의도가 기존에는 특정 납세자의 관점 측면에서 평가되었으나, 입법안에서는 가상의 합리적 납세자 측면의 평가로 변경되어 보다 일반화된 적용이 이루어짐
    - 이를 통해 의도 기준을 보다 객관화·일반화하여 특정 납세자의 실제 의도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부터 의도가 도출될 수 있게 됨<sup>45)</sup>
  - ▶ 특정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는 예비적인 입법 작업에서 언급된 조세규정을 회피하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의 이익을 주는 요소가 아니므로, 이런 거래들에 대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기존 일부 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입법 작업에서 언급된 조세회피 기회는 사법상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입법의 허점으로 보고 있었음<sup>46)</sup>

43) Regjeringen.no, <https://www.regjeringen.no/no/dokumenter/prop.-98-l-20182019/id2640864/sec1> & <https://www.regjeringen.no/no/aktuelt/proposisjon-om-lovfesting-av-omgaelsesregelen/id2641779/>, 검색일자: 2019. 4. 29

44)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norwegian-ministry-of-finance-issues-bill-proposal-for-statutory-general-anti-abuse-rule>, 검색일자: 2019. 4. 29

45) International Tax Review,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3541836/Norway-New-proposal-for-a-statutory-GAAR-in-Norway.html?ArticleId=3541836>, 검색일자: 2019. 5. 2

## 4 덴마크

### 가. 2019 재정법 의결

[조세동향 19-03회]

- 덴마크 의회는 2019년 3월 15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2019년 재정법을 의결함<sup>47)</sup>
  - ▶ 세법개정안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족한 경우 부과되는 추가 과세세율을 4.8%로 인상하고, 와인과 맥주의 물품세를 인하하며, 항공기의 등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덴마크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직전 3개 연도 평균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면서 자발적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 최종 확정 납부세액과 선납세액의 차이분에 대해 2.6%의 추가 과세를 하고 있었음<sup>48)</sup>

### 나. 은행의 혼성증권공제 허용 폐지 법안 공개

[조세동향 19-05회]

- 덴마크 과세장관(Skatteminister)은 2019년 5월 2일 은행의 혼성증권공제 허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공개함<sup>49)</sup>
  - ▶ EU 보조금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은행에 부여된 소위 혼성핵심자본(hybrid core capital)의 특별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과세장관은 최초 혼성핵심자본 공제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을 현재 달성하였고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폐지한다고 밝힘

46) International Tax Review, <https://www.internationaltaxreview.com/Article/3541836/Norway-New-proposal-for-a-statutory-GAAR-in-Norway.html?ArticleId=3541836>, 검색일자: 2019. 5. 2

47) Denmark Bill implementing tax measures under 2019 Finance Act adopted(15 Mar. 2019), News IBFD

48) L. Ambagtsheer-Pakarinen, Denmark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49) Skatteministeriets departement, <https://www.skm.dk/aktuelt/nyheder/2019/maj/regeringen-fjerner-saerbehandling-af-banker>, 검색일자: 2019. 5. 24

- ▶ 혼성핵심자본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은행에 대해 이의 이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음
- ▶ 제도의 폐지를 통해 2019년 175백만크로네 및 이후 매년 3억 5천만크로네의 세수가 확보될<sup>50)</sup>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세수는 노인연금 지원에 사용될 것임

## 5 독일

### 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독일 재무부는 2019년 1월 29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및 자료기록 의무와 관련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함<sup>51)</sup>
-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14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UStg) 22f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기록 및 유지 의무’와 25e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의무’에 관한 것임
  - ▶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VAT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할 의무를 짐
  - ▶ 이는 해외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독일 거주자에게 물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VAT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명, 주소, 납세자번호, VAT 사업자등록번호, VAT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는 과세당국의 증명서와 같은 기본 정보 외에

50) 2019년 4월 30일 기준 원화환산 시 각각 약 306억원 및 613억원임

51) Germany Ministry of Finance issues guidance on VAT rules for operators of online marketplaces(4 Feb, 2019), News IBFD;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2019-01-28-haftung-fuer-umsatzsteuer-beim-handel-mit-waren-im-internet.html;jsessionid=999D0D1987555FE49593D0F327B683B1](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2019-01-28-haftung-fuer-umsatzsteuer-beim-handel-mit-waren-im-internet.html;jsessionid=999D0D1987555FE49593D0F327B683B1), 접속일자: 2019. 2. 25

매출일, 운송정보, 총매출액과 같은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할 의무가 있음

- ▶ 판매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VAT 납세의무 이행 증명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발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VAT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해야 함
- ▶ 단,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로부터 과세당국에서 발급받은 VAT 납세의무 이행 증명서를 받은 경우 VAT 대리납부 의무를 지지 않음

## 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세법개정안 승인

[조세동향 19-03호]

- 독일 상원은 2019년 3월 15일 영국의 EU 탈퇴로 독일 거주자에게 미치는 세법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52)</sup>
  - ▶ 세법개정안 초안은 2018년 10월 9일 독일 재무부가 발표하였으며, 2019년 2월 21일 독일 하원에서 승인됨
  - ▶ 영국이 EU 탈퇴 시 독일 세법상 제3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럽연합(EU) 및 유럽 경제협력국(EEA)과 관련된 특정 세제혜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임
- 특정 과세제도는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보아 조세혜택을 계속 적용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독일 거주자가 EU 회원국 거주자에게 자산양도 시 5년에 걸쳐 과세하며, 영국을 제3국으로 보는 경우 영국 거주자에게 자산양도 시 즉시 과세되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 이전 양도한 거래의 경우 분할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함
  - ▶ EU 회원국 간 주식과 자산 교환 시 주식을 7년간 보유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비과세하며 영국의 EU 탈퇴 시 비과세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나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발생한 교환거래의 경우 주식을 7년 보유하면 비과세혜택을 계속 적용함

52) Germany; United Kingdom; European Union Bill on accompanying tax measures in connection with United Kingdom leaving European Union adopted by German Federal Council(19 Mar, 2019), News IBFD

- 또한 맨섬(Isle of Man)을 부가가치세법상 영국령으로 보지 않음
  - ▶ 기존에는 맨섬에서 제공한 공급을 영국에서 제공한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맨섬에서 제공하는 공급은 제3국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
  - ▶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다. 해외에 지급한 온라인 광고대금 원천징수안 철회

[조세동향 19-04호]

- 독일 재무부는 2019년 4월 10일 해외 인터넷 광고업자에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함<sup>53)</sup>
- 독일 연방 및 주정부는 해외 인터넷 광고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원천징수안을 최종 철회하였음
  - ▶ 최근 독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시 해외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온라인 광고대금 지급액은 로열티 혹은 노하우 사용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음<sup>54)</sup>
  - ▶ 독일 재무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해외에 지급한 온라인 광고대금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문제가 확대됨<sup>55)</sup>
  - ▶ 독일 연방 및 주정부는 검토 후 최종적으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인터넷 회사에 온라인 광고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안을 철회할 것임을 발표함<sup>56)</sup>
-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

53) Germany Ministry of Finance clarifies treatment of cross-border payments for online advertising(11 Apr, 2019), News IBFD

54)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german-tax-authorities-confirm-that-fees-for-online-advertising-should-not-be-subject-to-withholding>, 검색일자: 2019. 4. 22

55)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german-tax-authorities-confirm-that-fees-for-online-advertising-should-not-be-subject-to-withholding>, 검색일자: 2019. 4. 22

56) Tax Notes International, "Germany Ends Plan to Apply Royalty Withholding Tax to Online Ads," 2019. 4. 1

광고대금은 일시적 권리 사용대가 또는 노하우 사용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림

- ▶ 독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시적 권리 사용대가 또는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지급자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sup>57)</sup>

## 라. 부가가치세 개정안 제출

[조세동향 19-05호]

- 독일 연방재무부는 2019년 5월 8일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제출함<sup>58)</sup>
  - ▶ 금번 독일의 부가가치세 개정은 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와 유럽연합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EU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e-book에도 경감세율을 적용함<sup>59)</sup>
  - ▶ 독일은 출판물에 대해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왔으나, EU의 지침에서 e-book은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되어 19%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음
  - ▶ 2018년 10월 2일 EU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e-book에도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됨
- EU 국가 내 무역 거래 중 위탁 재고(call-off stock)의 경우 공급 대상 국가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물품의 이전 내용과 공급 대상국 내 중간 거래자의 신원 및 부가가치세 식별번호를 등록부에 기록함
  - ▶ 위탁 재고(call-off stock)란 비거주 공급자가 수출 대상국 현지에서의 재고 확보를 위해 미리 운송하여 보관하는 물품을 의미함<sup>60)</sup>
  - ▶ 이때 공급업체는 공급 대상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고정사업장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57) A. Perdelwitz, Germany Corporate Taxation sec. 7.3.3.3, Country Analyses IBFD

58) Germany-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on fiscal promotion of electromobility and amendment of other tax provisions(14 May 2019), News IBFD

5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reduced-vat-e-publications>, 검색일자: 2019. 5. 27

60)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german-ministry-of-finance-amends-vat-position-on-call-off-stocks>, 검색일자: 2019. 5. 24

- ▶ 판매 이전까지 소유권은 공급업체에 존재하며, 12개월 내에 물품이 처분되어야 함
- 연쇄 거래(chain transaction),<sup>61)</sup> 위탁 재고(call-off stock) 등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 관련 요약정보 및 운송증명 등을 제출해야 함
  - ▶ EU 내 무역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식별번호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EU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에 요청한 내용임
-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개정함
  - ▶ 독일은 B2B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시켜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단순화에 대한 특별 규정을 개정함
    - EU의 Art. 26(1) 6th Directive에서는 하나의 여행상품 제공을 위해 진행되는 종합적인 거래를 모두 단일서비스로 취급하여, 여행사법인이 등록되었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시설을 가진 국가에서 1회만 과세하도록 함
    - 여행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유형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규정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EU 회원국 내에서 공정한 수익 분배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임
  - ▶ 공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적용 대상을 보건 분야 활동이나 보건 전문직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함
    - EU의 Art. 132(1)(f) Directive 2006/112에 따라 복지 및 사회 보장, 교육, 스포츠 및 문화와 같은 공익 관련 거래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EU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의 대상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집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한정된 면제혜택으로 경쟁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임
- 이외에도 이익당사자인 업자가 탈세를 인지하거나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국내 취득 혹은 판매에 대한 공제 등 각종 공제권리 박탈 관련 조항을 도입함

61) 하나의 물품이 EU 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일련의 다중 거래망을 통해 전달되는 연쇄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최초 공급 국가와 최종 소비국 사이에서 이루어져 음. PwC, <https://www.pwc.com/sk/en/tax-services/value-added-tax/chain-transactions-and-vat.html>, 검색일자: 2019. 5. 27

## 6 룩셈부르크 - 2019 예산안 국회 제출

[조세동향 19-03호]

- 룩셈부르크 정부는 2019년 3월 5일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sup>62)</sup>
- 주요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자공제제한제도의 개정임
  - ▶ 법인세율을 기존 18%에서 17%로 인하하고, 15%의 경감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2만 5천유로에서 17만 5천유로로 확대함
    - 이로 인해 룩셈부르크 시티에 소재하는 법인은 고용기금납입료를 포함한 18.19%의 법인세율과 6.75%의 지방세율을 적용받아 24.9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 경제적 실체 단위로 이자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에 따라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이자공제제한 제도는 EBITDA의 30%와 3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연결 기준으로는 적용되지 않고 별도 기준으로만 적용되었음

## 7 벨기에

### 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1호]

- 벨기에 재무부는 2018년 12월 20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sup>63)</sup>

62) KPMG, <https://home.kpmg/lu/en/home/insights/2019/03/luxembourg-government-presents-the-2019-budget-bill.html>, 검색일자: 2019. 3. 31

63) Belgium Bill on fiscal, anti-abuse, financial and various other provisions submitted to parliament(27 Dec. 2018), News IBFD

- 초안에는 ① EU지침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시행시기 변경, ② 최종수익자 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 국가 확대, ③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관련한 예규 미발행, ④ 저세율국에 소재한 국가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음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1)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sup>64)</sup>의 시행시기를 기존에 계획한 2020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앞당길 것을 세법개정안 초안에 포함함

  - ▶ 벨기에는 2017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7월 EU지침에 따라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음<sup>65)</sup>
  
- 근로자가 해외 계열사로부터 스톡옵션 또는 현물급여를 받는 경우 벨기에 고용주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당국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 ▶ 현행 규정상 해외계열사로 지급받은 스톡옵션 또는 현물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최종수익자(Ultimate Beneficial Owner: UBO) 등록정보의 교환 대상 국가를 기존 EU 회원국에서 벨기에와 자동정보교환협정을 맺은 국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 최종수익자(UBO)<sup>66)</sup> 등록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법적·형식적 요건과 상관 없이 실제 수익에 대한 처분 및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과세당국에 등록하는 제도로 EU의 자금세탁방지법지침(2015/849)에 따라 2017년 9월 18일 도입한 제도임<sup>67)</sup>
  
- OECD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예규(ruling)를 발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64)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이자비용이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순이익(EBITDA)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됨

6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18-7호, 2018 참조

66) 최종수익자는 회사의 지분(무기명주식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한 자, 지분율과 상관 없이 주주약정 또는 이사회임명권 등 실질적인 회사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비영리단체의 대표, 신탁의 설정자 등이 해당됨. 벨기에 재무부, <https://financien.belgium.be/nl/node/7097>, 검색일자: 2019. 1. 26

67) 벨기에 재무부, <https://financien.belgium.be/nl/node/7097>, 검색일자: 2019. 1. 26

- ▶ 예규는 납세자가 과세불확실성 해소 목적으로 특정 거래의 과세방안을 예규발행위원회(Ruling Committee)에 사전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발행한 예규는 법적 효력을 가짐<sup>68)</sup>
    - 즉, 납세자가 예규 발행 요청 시 제공한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예규에서 정한 대로 신고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예규에서 정한 대로 과세함
  - ▶ 따라서 예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벨기에 법인이 벨기에와 정보교환 관련 협약을 맺지 않은 저세율국에 소재한 기업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벨기에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함
- ▶ 현행 기준에 따르면 벨기에 법인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3년임

## 나. 조세회피방지법안 최종 승인 및 EU의 VAT 지침 이행

[조세동향 19-02호]

- 벨기에 의회는 2019년 1월 30일 'EU의 디지털상거래 및 바우처 관련 지침' 이행안을, 2019년 1월 31일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69)</sup>
- ▶ 벨기에 재무부는 2018년 12월 20일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sup>70)</sup>
  - ▶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2018년 9월 28일 EU의 바우처 및 디지털상거래 관련 지침을 이행하는 안에 합의했음을 발표한 바 있음<sup>71)</sup>

68) Marc Quaghebeur, *Advance Tax Rulings in Belgium*, p. 53, IBFD, 2007

69) Belgium Bill on fiscal, anti-abuse, financial and other provisions adopted by parliament(4 Feb. 2019), News IBFD; Belgium; European Union Draft bill to implement EU VAT Directives on vouchers and digital services adopted by Belgian parliament(4 Feb. 2019), News IBFD

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1호, 2019

71) Belgium; European Union Council of Ministers agrees on draft bill implementing EU VAT Directives on vouchers and digital services(3 Oct. 2018), News IBFD

**다. 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수령 시 과세율 개정**

[조세동향 19-03회]

- 벨기에는 2019년 3월 15일 소득세법상 연금 수령 나이(pension age) 및 장기근무자의 연금 조기 수령 시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72)</sup>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금 수령 나이인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며, 조기 수령 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과세율이 상이함
  - ▶ 62~64세에 연금 수령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됨
  - ▶ 61세에 연금 수령 시 18%의 세율이 적용됨
  - ▶ 60세에 연금 수령 시 20%의 세율이 적용됨
- 개정안에 따라 현행 연금 수령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며, 2025년부터 66세로, 2030년부터 67세로 변경함
- 또한 4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 수령 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함
  - ▶ 기존 규정에서는 45년 이상 근무한 자도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10~20%의 세율이 적용됨
- 위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 대상 확대**

[조세동향 19-04회]

- 벨기에 의회는 2019년 3월 14일 및 4월 4일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72) IBFD, "Law on notion of pensionable age gazetted," 2019. 3. 15

- 정원(garden)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식물 구입비용, 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경감세율 6%를 적용하도록 개정함

  - ▶ 벨기에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1%이며, 0%, 6%, 12%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sup>73)</sup>
  -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증진 및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목적임<sup>74)</sup>
  
- 전자로 발행되는 신문, 정기간행물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며, 전자출판물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6%를 적용하도록 개정함

  - ▶ 개정 전 규정에서는 전자로 발행되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21%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현행 규정에서는 종이로 발행되는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종이로 발간된 출판물에 대해 경감세율 6%를 적용함<sup>75)</sup>
    -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발행되어야 하고, 1년에 최소 48회 발간되어야 함<sup>76)</sup>
    -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광고 목적의 출판물, 한정된 기간에만 발간되는 출판물, 산업·금융·상업 분야 이익을 위해 발간되는 출판물, 전문가용 저널 등은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종이출판물과 동일하게 6%의 세율이 적용됨<sup>77)</sup>
  
- 개정 내용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단,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경우 EU의 부가세지침(EU directive 2006/112)상 경감세율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EU의 지침 수정 시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73) M. Govers, Belgium Value Added Tax, section 7.2, Topical Analyses IBFD

74)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carltonreid/2019/03/21/belgium-reduces-sales-tax-on-bicycles-by-15-to-boost-health-and-reduce-congestion/#6a6974233e9d>, 검색일자: 2019. 4. 29

75) M. Govers, Belgium Value Added Tax, section 7.2, Topical Analyses IBFD

76) M. Govers, Belgium Value Added Tax, section 7.2, Topical Analyses IBFD

77) M. Govers, Belgium Value Added Tax, section 7.2, Topical Analyses IBFD

## 8 스웨덴 - 2019년 세법 추가 개정 계획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스웨덴 정부는 2019년도 추가적인 세법개정 방침을 포함한 조세정책 계획을 2019년 1월 18일자로 발표함<sup>78)</sup>

  - ▶ 최근 스웨덴 총리 재선 및 연립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2018년 11월에 발표된 2019 예산안<sup>79)</sup>에 이은 추가적 세법개정 방침을 발표함
  - ▶ 개인소득세 및 간접세 일부 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상정함
  
-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득세 혜택을 강화하고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 및 노조회원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현행 2만 5천스웨덴크로나에서 5만스웨덴 크로나까지 확대함<sup>80)</sup>
    - 65세 미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한도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더욱 높일 계획임
    - 향후 소득공제 한도를 7만 5천스웨덴크로나까지 인상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가사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
  -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선단체 및 과학연구단체에 기부하는 금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할 예정임
  - ▶ 노동조합회원비(union membership fees)에 적용하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2019년 4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임
  
- 일부 거래 및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등 간접세율을 정상화 또는 인하할 예정임

78)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8\\_se\\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8_se_1.html), 검색일자: 2019. 2. 20  
Tax Notes International, January 28, 2019. pp. 431~432

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2호, 2018 참고

80) 1스웨덴크로나는 2019년 2월 평균환율로 환산하면 121.05원으로(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이를 적용하면 현행 소득공제 약 3백만원을 약 6백만원으로 확대한 것임

- ▶ 국립공원 입장 및 관광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경감세율(6%) 대신 정상세율(25%)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 ▶ 농업 및 산림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디젤유에 대한 물품세(excise duty)를 인하할 계획임

## 9 스위스 - 법인세법 개정안 'Tax Proposal 17' 최종 채택

[조세동향 19-05호]

- 2019년 5월 19일 스위스의 법인세법 개정안(Tax Proposal 17, 이하 'TP 17')이 국민투표 결과 66.4%의 찬성을 얻어 최종 통과됨<sup>81)</sup>
  - ▶ 스위스 칸톤정부별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며, 국내기업보다 다국적 기업에 우대하여 조세혜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유럽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정하는 것임
- 'TP 17'은 과거 법인세법 개정안 'Corporate Tax Reform III(CTR)'의 국민투표 결과 부결되어 새롭게 발표된 것이며, 2018년 9월 스위스 의회에서 최종 채택된 이후 국민투표 진행결과 최종 통과된 것임
  - ▶ 스위스는 유권자 5만명 이상이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하거나 8개 칸톤정부 모두가 국민투표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함<sup>82)</sup>

〈표 II-1〉 스위스의 새로운 법인세법 개정안 TP 17 채택 연혁

구분	내용
2017. 2.	법인세법 개정안 CTR III의 국민투표 부결
2017. 6.	스위스 연방 칸톤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새로운 세법개정안(TP 17) 채택
2017. 9.	스위스 의회는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진행

81) Switzerland Corporate Tax Reform approved(20 May 2019), News IBFD

82) Tax Notes international, *Parliament Close to Passing Corporate Tax Reform Package*, 2018. 9. 24

〈표 II-1〉의 계속

구분	내용
2018. 1.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에 대해 의회논의 진행
2018. 9.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 의회에서 최종 채택
2019. 5.	새로운 세법개정안 TP 17 국민투표 결과 최종 승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0호 인용

- 개정된 내용에는 칸톤정부별로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하는 조세혜택을 폐지하고, OECD 기준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도입, R&D 비용의 추가공제 허용 및 연방정부가 칸톤정부에 배분하는 세수비중 인상 등의 내용이 있음<sup>83)</sup>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10 스페인

### 가. 2019년 예산법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1호]

- 스페인 정부는 2019년 1월 14일자로 2019년 「예산법안(Budget Bill for 2019)」을 의회에 제출함<sup>84)</sup>
  - ▶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에 1차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개정사항들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법안을 제출함

83) 자세한 개정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0호, 2018 참고

84)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23\\_es\\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23_es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9. 1. 25  
 Allen&Overly, <http://www.allenoverly.com/publications/en-gb/Pages/2019-State-Budget-Bill-of-Law.aspx>, 검색일자: 2019. 1. 24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1ert--spain-releases-2019-state-budget-bill>, 검색일자: 2019. 1. 25

- ▶ 향후 의회에서의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이 수정·확정될 예정이며, 추가 개정안으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법인세

- 해외 자회사 및 국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비율을 기존 100%에서 95%로 축소함
  - ▶ 현재 법인세법상 내국 및 외국 자회사들로부터 스페인 법인이 수령한 배당소득 및 자본이익(capital gains) 등에 대해서는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 ▶ 개정안에서는 해외 및 국내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여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및 자본 이익에 대한 소득 감면율을 기존 100%에서 95%로 축소함
    - 스페인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으로부터 받는 이익 송금에 대해서도 축소된 감면율(95%)을 적용함
  - ▶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소득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100%에서 95%로 축소 적용함
    - 고정사업장 폐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잔여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
    - 연결납세그룹 소속 법인들 간에 제공된 이익참가부사채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 등
- 세액공제 방식의 이중과세방지규정 또한 공제 가능 한도가 100%에서 95%로 축소됨
  - ▶ 현행 법령상 원천지국으로부터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해외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본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음
  - ▶ 개정안에서는 해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아래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천지국 부담세액의 95%만을 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 해외 원천지국에서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 당해 원천소득이 스페인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을 경우 스페인 세법에 따라 부담하였을 세액의 95%
- 법인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해당 임원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법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멤버들 중 여성 이사 인원이 증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정책의 일환임
- ▶ 이사회에 신규 여성 임원이 취임한 경우 해당 임원에 지급한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 시 적용함

□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 시 적용할 세율을 일부 상향하여 일원화함

- ▶ 기본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연도 산출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 ▶ 기존 법령상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7%, 직전연도 매출액 1천만유로 초과 법인에는 23%의 중간예납세율을 적용하였음
- ▶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법인 및 대규모 매출 법인 모두 중간예납세율을 24%로 통일하여 적용함

2) 기타

□ (부가가치세) VAT 경감세율 적용 대상에 디지털 도서 및 출판물, 기타 위생용품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 ▶ 현행 스페인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이며, 아래와 같은 특정 항목들에 한해 4% 또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4% 세율 적용 대상: 기본 음식품, 도서, 잡지, 인체용 의약품, 장애인용품
  - 10% 세율 적용 대상: 동물용 의약품, 기타 의료기기, 여객운송업, 호텔·요식업, 공연업, 박물관·전시장 등
- ▶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대해 4% 및 10%의 경감세율을 각각 신규 적용하도록 함
  - 4% 세율 적용: 디지털 도서·신문·잡지의 다운로드 또는 구독, 기본적인 여성 위생용품
  - 10% 세율 적용: 동물치료 관련 서비스업, 남성용 피임기구 등

□ (물품세) 디젤 연료에 대해 적용되는 물품세율을 일부 인상함

- ▶ 기존 법령상 탄화수소(hydrocarbon) 디젤 연료에 대하여 1천리터당 307유로의 물품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천리터당 345유로로 인상하여 과세를 강화함

## 나. 2019 주요 세무관리 계획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스페인 과세당국은 2019년도 과세관리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Resolution on annual plan for tax and customs control 2019)을 2019년 1월 17일자로 발표함<sup>85)</sup>
  - ▶ 해당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sup>86)</sup>에 의거하여 매년 세무당국의 조사 등 관리방안의 개요를 발표하는 것임
  - ▶ 조세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페인 과세당국이 조사 과정 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임
  - ▶ 전자인증서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편의를 돕고, 개인소득세 납세 관련 웹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납세협력 증진 조치를 시행함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납세 지원 전산서비스 구축을 2019년도 내에 마무리할 것임
- 다국적 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세무 조사 및 검증 절차들을 강화할 예정임
  - ▶ 다국적 기업 및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세원을 미리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d Pricing Agreements) 및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등을 적극 활용

85)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28\\_es\\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28_es_2.html), 검색일자: 2019. 2. 18  
스페인 관보,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19-507>, 검색일자: 2019. 2. 20

86) Article 116 of the General Tax Act

-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과정에서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 활용을 확대할 예정임
  - ▶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다국적 기업 간 용역수수료 및 사용료 지급 등 세원잠식 우려가 큰 항목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임
  - ▶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배분 적정성 및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조세구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함
-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누락된 과세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 OECD 공통보고 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할 것임
  - ▶ 사업 및 전문용역 소득활동을 숨기거나 법인을 활용한 조세탈루 시도를 포착하기 위해 기습조사 및 전산조사 등의 조치를 적절히 사용할 것임
  - ▶ 일반적인 세관 통관 절차 이외에도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사업활동이 저조한 기업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임
- 조세 징수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탈루 및 세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천할 것임
- ▶ 조세 납부 미이행 위험 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징수 부족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임
  - ▶ 납세의무를 관련 제3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의 납세의무자를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할 예정임
  - ▶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여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정보 교환을 확대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세액공제로서 개인소득세와도 연관된 항목
- 상속세 및 부유세(wealth tax)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과세당국이 공통의 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
- 주소 변동 상황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의 정보

## 11 아일랜드

### 가. EU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 이행 발표

[조세동향 19-01호]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8년 12월 21일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규정한 EU지침(2017/2455)을 이행할 것을 발표함<sup>87)</sup>
  - ▶ EU지침은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2017년 12월 5일 승인됨
  - ▶ 지침에서 제안된 사항은 2019년과 2021년으로 시행단계를 나누어 발표함
- 2019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 간 전자적 용역 거래 시 영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공급지국에서 VAT를 징수 및 납부함
  - ▶ 영세사업자는 EU 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액이 연간 1만 유로 이하인 사업자를 말함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자적 용역의 국제거래 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소비지국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거나 소비지국 한 곳에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해야 함
  - ▶ 이는 EU 회원국에 소액의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영세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87) Ireland VAT rules on eCommerce - EU Directive implemented(8 Jan. 2019), News IBFD

- 2021년부터 해외 판매자가 아일랜드 거주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편사업자등록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소액 수입재화에 대한 VAT 면세점을 폐지함
  - ▶ 따라서 해외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EU 회원국 여러 곳에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재화를 판매한 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아일랜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VAT를 납부할 수 있음

## 나. 과세당국에 최종수익자 등록정보 접근 권한 부여

[조세동향 19-02호]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9년 2월 1일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2015/849)<sup>88)</sup> 및 EU의 상호협력지침(Mutual Assistance Directive, 2011/16)의 일부 조항을 이행할 것을 발표함<sup>89)</sup>
  - ▶ 자금세탁방지지침 제31조의 1, 2, 3, 7호를 이행할 것임
  - ▶ 상호협력지침 제22조의 1a항을 이행할 것임
- 자금세탁방지지침 제31조 1, 2, 3, 7호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신탁은 신탁 관련 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요구 시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함
  - ▶ 신탁은 신탁자(settlor), 수탁자(trustee), 보호자(protector), 수익자(beneficiary), 신탁의 실질적 지배자의 최신 정보를 기록해야 함
- 상호협력지침 제22조의 1a항에 따라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제출받은 정보는 다른 EU 회원국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앞서 기술된 EU의 두 가지 지침 이행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탁의 최종수익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EU 회원국 간 해당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됨

88) EU에서 2015년 5월 20일 발표한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으로 불법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전문직 종사자, 신탁, 부동산 중개인 등에게 자금세탁활동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0849>, 검색일자: 2019. 2. 26

89) Ireland; European Union Tax authorities authorized to access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gazetted (13 Feb. 2019), News IBFD

## 12 영국

### 가.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노력·결과 및 향후 계획 공개

[조세동향 19-03호]

- 영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은 2019년 3월 13일 그동안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노력·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보고서를 공개함<sup>90)</sup>
- 첫 번째 보고서인 조세회피, 포탈, 다른 형태의 불이행의 방지(Tackling tax avoidance, evasion and the other forms of non-compliance)는 2010년 이후 조세회피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과 및 향후 계획을 담고 있음<sup>91)</sup>
  - ▶ 이 보고서는 세 챕터로 나누어져 다른 납세자 형태별 과세관청의 납세협력 전략과 접근방법,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응하는 세부적인 정부의 대응 및 과세관청에 대한 투자와 향후 활동 계획으로 구분됨
  - ▶ 다른 납세자 형태별 과세관청의 납세협력 전략과 접근방법은 조세행정의 전자화,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조세행정 체계와 중소기업과 개인, 자산가, 대기업별 촉진, 방지, 대응의 구분된 접근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응하는 세부적인 정부의 대응은 2010년 이후 조세회피전략의 판매와 사용을 지양시키고 온라인 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초점을 두며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역외 구조화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 과세관청에 대한 투자와 향후 활동 계획은 2010년 이후 HMRC에 2십억파운드<sup>92)</sup> 투자의 세부 내용과 향후 조세회피 방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음

90)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safe-havens-2019?utm\\_source=67cf628b-ee14-4c2b-ad00-3ac509e38e5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safe-havens-2019?utm_source=67cf628b-ee14-4c2b-ad00-3ac509e38e5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 &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safe-havens-2019?utm\\_source=67cf628b-ee14-4c2b-ad00-3ac509e38e5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safe-havens-2019?utm_source=67cf628b-ee14-4c2b-ad00-3ac509e38e57&utm_medium=email&utm_campaign=govuk-notifications&utm_content=immediate), 검색일자 2019. 3. 31

91) HM Treasury & HM Revenue & Customs, Tackling tax avoidance, evasion and the other forms of non-compliance, March 2019

92) 원화로 약 2,98조원(19/3/29 환율 1,492원/파운드 적용 시)

- ▶ 또한 두 개의 부록을 통해 2010년 이후 입법안 등의 정부의 조세회피 방지 대응 활동과 2019년 재정법(Finance Act 2019)의 효과성 분석을 담고 있음
- ▣ 두 번째 보고서인 조세피난처규제 2019(No Safe Haven 2019)는 과세관청의 역외 조세 의무 불이행에 대응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 ▶ 이 보고서는 재무장관의 서언(Foreword from Mel Stride MP, Financial Secretary to the Treasury), 서론, 국제적인 선도, 협력 지원, 적절한 대응, 부록의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이 보고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역외 조세협력을 도모하면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음
    - 설정된 목적은 세수의 극대화과 동시에 조세 회피 및 포탈의 감소, 납세자에게 적합한 형태로의 조세 변환, 전문적·효율적·참여적인 조직의 설계 및 운영임
  - ▶ 국제적으로 선도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해 다른 국가의 과세관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의 역외 활동에 조력하며 위험과 행동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채택함

## 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에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조세동향 19-06호]

- ▣ 영국 국세청은 2019년 6월 13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에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제안서를 공개함<sup>93)</sup>
  - ▶ 이 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에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는 조세포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 이 정책제안서에는 제도의 안내사항과 시행령(Statutory Instrument), 법안 주석(Explanatory Memorandum)이 포함되어 있음

93)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vat-reverse-charge-for-renewable-energy-certificates>, 검색 일자: 2019. 6. 26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재생수단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가스 및 전력 발전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임

  - ▶ 또한 이러한 인증서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음
  
- 변경된 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매 시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 적용 대상은 가스 및 전력 인증서(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매매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등이며, 시행시기는 2019년 6월 14일임
  -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이를 매입자납부제도로 변경하는 것임
    - EU 지침에서는 가스 및 전력 인증서 공급에 대해 매입자납부제도(reverse charge)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 영국 과세관청은 변경된 세제로 인한 경제적 또는 행정적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인증서를 매매하는 사업자들이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할 때 일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됨

**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 세제 보고서 공개**

[조세동향 19-06호]

- 영국 재무부의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은 2019년 5월 16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일상적 세제의 간소화 보고서(Simplifying everyday tax for smaller business)를 공개함<sup>94)</sup>

  - ▶ 이 보고서는 2018년 7월 영국 총리가 조세간소화국에 사업자(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일상적 활동 세제에 초점을 맞춘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되는 보고서임
  - ▶ 조세간소화국은 창업 초기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의 5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침 제공 등 총 10개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94)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implifying-everyday-tax-for-smaller-businesses>, 검색 일자: 2019. 6. 26

- 첫 번째 분야는 창업 초기 단계에 초점을 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임

  - ▶ 정부는 각 사업 진행의 주요 단계별 세제에 초점을 두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창업지침을 조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함
  
- 두 번째 분야는 원천징수제도(PAYE)로 두 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됨

  - ▶ 원천징수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개선과 시스템 변경에 과세관청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을 권고함
    - 이에 더하여 2017년 과세관청이 실행하겠다고 밝힌 실시간 정보의 사후적 집행 검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분야를 식별하여 재설계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함
  - ▶ 실시간 조세정보(Real Time Information)가 반영되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검토는 실시간 조세정보가 반영되는 원천징수제도가 현대적 체계와 적합한지 고려하는 것과 이를 간소화하고 일관되게 만드는 방안 등을 찾는 것을 포함함
  
- 세 번째 분야는 과세관청의 역할로 두 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됨

  - ▶ 과세관청은 기관의 전략 실행을 감독하고 전담하는 고위 공무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음
  - ▶ 과세관청이 제도 설계와 개선 및 관련 지침에 대한 기관의 의식 및 수요를 일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화를 권고함
    - 이를 위해 주요 개선사항의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 피드백 현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분야는 법인세와 소기업으로 세 가지 권고사항이 제시됨

  - ▶ 소규모 기업들의 장부기장 및 납세신고를 지원하는 전자적인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할 필요가 있음
  - ▶ 전자적 신고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웹페이지만을 제공함
  - ▶ 12개월을 일부 초과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두 건의 납세신고를 하는 기업들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섯 번째 분야는 조세행정과 체계 변경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두 가지 권고 사항이 제시됨
  - ▶ 과세관청은 전체 조세체계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주요 요소들을 단계화 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과세관청은 주요 세제를 포괄하여 납부체계를 일관되고 조화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 13 오스트리아

### 가. 디지털서비스 과세 강화방안 발표

[조세동향 19-01호]

- 오스트리아 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19년 1월 11일자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을 발표함<sup>95)</sup>
  - ▶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2018년 3월에 발표된 EU의 제안<sup>96)</sup> 등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과세방침을 발표함
  -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에 대한 EU 차원에서의 확립된 과세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내국세 법 단계에서 과세방안을 모색한 결과임
  -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방안이 확립되기 이전에 일부 거래에 대한 과세를 우선 시행하는 잠정적인 조치(interim tax)에 해당함
    -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규모 다국적 기술기업들에 대한 과세에 초점을 둠
-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로서 오스트리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광고 매출액을

95)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90115\\_1426.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at_20190115_1426.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9. 1. 28

E&Y, [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_International\\_Tax\\_Review\\_01\\_2019/\\$FILE/EY%20Austria%20International%20Tax%20Review%2001%202019.pdf](https://www.ey.com/Publication/vwLUAssets/EY_International_Tax_Review_01_2019/$FILE/EY%20Austria%20International%20Tax%20Review%2001%202019.pdf), 검색일자: 2019. 1. 28

9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March 21, 2018

창출하는 기업들에 한해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적용할 예정임

- ▶ 과세 대상 거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임
- ▶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이고 오스트리아에서의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해 적용토록 함
- ▶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과세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온라인 구매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확대, 과세자료 확보 등의 조치를 강화할 예정임

- ▶ 현재 제3국 소재 판매자로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물품가액이 22유로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면제 혜택을 폐지할 예정임
- ▶ 온라인 공유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과세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나. 디지털 과세 패키지 일부 규정 승인

[조세동향 19-04호]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2019년 4월 3일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과세방안을 담고 있는 디지털 과세 패키지의 첫 번째 부분을 승인하고 전문가 평가를 진행함<sup>97)</sup>

-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디지털 과세 패키지를 통해 조세체계의 허점을 보충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힘
- ▶ 디지털 과세 패키지는 거대 디지털 기업들의 광고수익에 대한 과세, 온라인 소매매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수익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기업의 온라인 광고 수익(revenue)에 대해 5% 세율로 과세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연간 매출액(sales)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이거나 오스트리아 내 매출액(sales)이 2,500만유로 이상인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수익(revenue)에 대해 5%의 세율로 과세함<sup>98)</sup>

97)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Loeger\\_Fuchs\\_digital\\_tax\\_on\\_large\\_digital\\_corporations\\_.html](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Loeger_Fuchs_digital_tax_on_large_digital_corporations_.html), 검색일자: 2019. 4. 29

- 이러한 과세체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과세 제안에 근거한 것임
- ▶ 이러한 과세를 통한 세수 중 1,500만유로는 오스트리아 미디어회사들의 디지털 전환 작업에 사용될 예정임<sup>99)</sup>
- 부가가치세 개별 품목별 한도 면세를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로 간주함<sup>100)</sup>
  - ▶ 2021년 1월 1일부터 현행 EU 비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재화의 면세한도 22유로를 폐지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재화의 가치 평가에 있어 많은 허점이 있어 적정하게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 ▶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인터넷 판매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에 있어 재화의 공급자 및 대가의 수취인으로 간주하여,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부여함
  - ▶ 2021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으로부터 국내 비사업자에게 매출 시 3만 5천유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한도를 폐지함
- 조세징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이로 인한 관련 납부 의무를 부담시킴<sup>101)</sup>
- 2020년부터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과세당국에 관련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며 미신고된 거래에 대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

98)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ia-publishes-draft-digital-advertising-tax-bill>, 검색일자: 2019. 4. 29

99)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Loeger\\_Fuchs\\_digital\\_tax\\_on\\_large\\_digital\\_corporations\\_.html](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Loeger_Fuchs_digital_tax_on_large_digital_corporations_.html), 검색일자: 2019. 4. 29

100)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ia-publishes-draft-digital-advertising-tax-bill>, 검색일자: 2019. 4. 29

101)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ia-publishes-draft-digital-advertising-tax-bill>, 검색일자: 2019. 4. 29

다. 세법개혁안 공개

[조세동향 19-05회]

-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2019년 4월 30일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 개혁안을 공개함<sup>102)</sup>

  -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Relieving Austria라는 기치 아래 고용촉진, 투자매력도 증대 및 중소기업의 강화를 촉진하고자 세법 개혁안을 공개함
  - ▶ 이 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등의 법인세법 개혁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5억유로 이상의 감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 세법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라고 밝히고 있음

  - ▶ 현행 법인세율인 25%를 2022년까지 2%p 인하하여 23%로 낮추고, 2023년에는 다시 2%p 인하하여 21%로 낮춤
    - 오스트리아 법인세율인 25%는 주변 국가들의 세율과 유사해졌으나, 여전히 2005년의 세율 수준으로 국제적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세율 인하를 추진함
  - ▶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 회사들의 세부담이 2022년까지 8억유로로 완화되며, 2023년부터는 매년 16억유로의 부담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 사업환경 매력도 촉진을 위한 여타 세법의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 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여되는 최소 매출액 한도를 현행 3만유로에서 3만 5천유로로 완화함
  - ▶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금액한도를 현행 400유로에서 2020년에는 800유로로, 2021년에는 1천유로로 확대함
  - ▶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일부 구간에 대해 세율 인하를 추진함<sup>103)</sup>
    - 2021년 누진세율 첫 번째 구간(소득 1만 1천유로에서 1만 8천유로까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함

102)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Tax\\_Reform\\_to\\_Relieve\\_Burden\\_on\\_Companies.html](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Tax_Reform_to_Relieve_Burden_on_Companies.html), 검색일자: 2019. 5. 24

103) Ernst & Young,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austrian-government-introduces-phased-in-tax-reform-including-a-decrease-in-corporate-income-tax-rate>, 검색일자: 2019. 5. 24

- 2022년 누진세율 두 번째 구간(소득 1만 8천유로에서 3만 1천유로까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인하하고, 세 번째 구간(소득 3만 1천유로에서 6만유로까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42%에서 40%로 인하함
- ▶ 이외에 이익분배에 따른 종업원의 소득에 이익의 10% 및 3천유로를 한도로 사회보장기여금을 면제하는 우대과세<sup>104)</sup>를 적용하고, 소기업의 소득에 단순화된 단일 세율 적용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 라. 조세사기방지 법안 공개

[조세동향 19-05호]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2019년 5월 8일 조세사기방지 법안을 공개하고 이를 전문가 평가위원회에 제출함<sup>105)</sup>
  - ▶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 법안이 세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견고한 제도를 실행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조직화된 국제적 조세회피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법안은 조세회피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조세회피, 밀수 등에 따른 조세법령 등의 위반 시 금전적 벌금에 더하여 1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징역형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함
  - ▶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형사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가가치세 사기행위가 다른 EU 회원국의 세수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오스트리아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 단순히 의심되는 사기행위라 하더라도 검찰의 지휘 아래 해당 관청이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이외에 조세전문가가 관여된 모든 구조화 거래가 2개국 이상의 국제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공유경제 분야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제재와 5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

104) Tax foundation, <https://taxfoundation.org/austria-tax-reform-plan/>, 검색일자: 2019. 6. 2

105)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Finance, [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Loeger\\_and\\_Fuchs\\_submit\\_Anti-Fraud\\_Package.html](https://english.bmf.gv.at/ministry/press/Loeger_and_Fuchs_submit_Anti-Fraud_Package.html), 검색일자: 2019. 5. 24

## 14 이탈리아 - 2019년 예산법 발표

[조세동향 19-01호]

- 2018년 12월 29일 이탈리아 의회는 2019년 예산법(Budget Law for 2019)을 승인하였으며, 동 법은 2019년 1월 1일 발효됨<sup>106)</sup>

  -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투자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가상이자율 공제규정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 투자 관련 가속상각제도, 대체세(Substitute Tax), 디지털세 개정 등이 있음
  
- 신규 사업용 자산 취득 및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재투자된 이익분에 대해서 감면된 법인세율 15%를 적용함<sup>107)</sup>

  - ▶ 당기 과세 대상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된 세율을 적용함
    - ①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이익, ② 사업용 자산 투자액과 종업원 신규고용비용 합계액 중 작은 금액
  - ▶ 만약 재투자된 이익이 당기 과세 대상 소득을 초과할 경우, 당기 과세 대상 소득은 모두 15% 세율로 과세되며, 초과분은 이월 공제가 가능함
  - ▶ 부동산, 회사용 차량,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적용을 배제함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을 폐지함

  - ▶ 가상이자율 공제규정은 자본금 증가액에 가상이자율(1.5%)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임
  - ▶ 2019년 이전 이전 공제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함
  
- ‘Industry 4.0 plan’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 및 디지털 개발 분야 회사가 2019년에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투자비용에 대해 추가감가상각특례제도를 허용함

  - ▶ 2019년 사업연도의 추가상각 허용액은 다음과 같음

106) Italy Budget Law for 2019 approved(31 Dec 2018), News IBFD., EY-Global Tax Alert, Italy approves 2019 budget law(7 Jan 2019)

107) 표준법인세율 24% 대비 9%p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함

- 250만유로 상당의 투자: 장부가액의 170% 추가상각 허용
  - 250만~1천만유로 상당의 투자: 장부가액의 100% 추가상각 허용
  - 1천만~2천만유로 상당의 투자: 장부가액의 50% 추가상각 허용
  - ▶ 판매자가 구입오더를 수락하고, 총구입비용의 20%를 2019년 말까지 선납할 경우 동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적용 가능함
  - ▶ 2017년도 예산법에 포함된 무형자산에 대한 40% 추가상각제도는 2019년도까지 연장됨
- R&D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였으며,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금액에 대해 50% 세액공제가 가능함
    - 대학, 리서치 기관, 혁신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과 계약되어야 함
    -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 직접 인건비
  - ▶ 연간 세액공제 최대액은 1천만유로임(이전 사업연도 최대액은 2천만유로였음)
  - ▶ 2018년도 사업분부터 R&D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사항으로 적격비용 증명서 및 기술 레포트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개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외국 기업의 비상장주식 대체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분유형 별로 10%(소수주주지분), 11%(대주주지분)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sup>108)</sup>
- ▶ 2019년 1월 1일 소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대체세를 납부하여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옴
    - 대주주라 함은 보유 지분율이 의결권의 20%를 초과하거나 총주주자본의 25%를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 이전 연도 예산법<sup>109)</sup>에 포함된 디지털세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서비스세(Italian Digital Services Tax: Italian DST)를 도입

108) 2018년 예산법에서는 개인거주자의 경우 대체세율은 8%였으며, 비거주자 기업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해 26%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109) 2018년 예산법에서는 연간 3천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3%의 세율로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 동 법은 이탈리아에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용되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모두), 개인 또는 그룹 수준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됨
  - 전체 총매출액 금액이 7천 500만유로 이상<sup>110)</sup>
  - 이탈리아에서 발생된 디지털 용역의 매출 금액이 550만유로<sup>111)</sup> 이상
- ▶ 디지털세 과세 대상 용역은 다음과 같음
  - 동일한 인터페이스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광고용역
  - 사용자 간 교류 목적(또는 재화와 용역의 직접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디지털 다자간 인터페이스 용역
  - 사용자로부터 수집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으로부터 산출된 정보의 교환
- ▶ 디지털 용역의 판매금액에 대해 3% 세율로 과세되며, 디지털 용역의 공급자는 분기별로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세부 시행지침은 2019년 4월 말까지 공표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15 체코

### 가. EU 조세회피방지지침 법안 확정

[조세동향 19-03호]

- 체코 대통령은 2019년 3월 15일 제3국 혼성불일치를 포함한 EU 조세회피방지지침(ATAD)을 채택하는 법안에 서명함<sup>112)</sup>
  - ▶ 이 지침은 이자비용공제제한, 출국세, GAAR, CFC 규정 및 혼성불일치 해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sup>113)</sup>

110) 한화 약 9,535억원(2019년 1월 27일 환율 1유로 1,271.38원 기준)

111) 한화 약 70억원(2019년 1월 27일 환율 1유로 1,271.38원 기준)

112) Czech Republic Bill implementing ATAD, introducing other tax changes - signed by president(18 Mar. 2019), News IBFD

- ▶ 이 법안은 하원에서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다시 하원에서 재의결된 후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됨

## 나. 디지털 용역과세안 공개

[조세동향 19-05호]

- 체코 재무장관은 2019년 4월 30일 디지털 용역과세안을 공개함<sup>114)</sup>
  - ▶ 이 과세안은 연 전 세계 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 기업의 광고 등의 디지털 용역에 대해 7%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임
    - 체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도 과세 요건 중 하나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음<sup>115)</sup>
  - ▶ 보수적인 추정으로 디지털 과세신고에 따른 세수는 50억코로나<sup>116)</sup>로 예상됨
  - ▶ 이 법안은 5월 말에 발의될 예정이며 시행시기는 2020년 중반이 될 것임

## 16 포르투갈 - EU의 조세회피방지 지침 도입안 최종 승인

[조세동향 19-05호]

- 포르투갈은 2019년 5월 3일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sup>117)</sup>을 국내법에 입법하는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sup>118)</sup>
  - ▶ 포르투갈 정부는 2019년 1월 23일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을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113)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6-2호, 2016 참조

114) Ministry of Finance of Czech Republic, <https://www.mfcr.cz/cs/aktualne/tiskove-zpravy/2019/ceska-republika-zavede-digitalni-dan-ve-35090>, 검색일자: 2019. 5. 24

115)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9/05/tmf-czech-republic-proposal-digital-services-tax.html>, 검색일자: 2019. 5. 24

116) 2019년 4월 30일 기준 원화환산 시 약 2,500억원임

117) European Union Anti-Tax Avoidance Directive(EU) 2016/1164(2016)

118) Portugal; European Union Law implementing ATAD provisions gazetted(14 May 2019), News IBFD

초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sup>119)</sup> 이번에 최종 승인된 개정안에는 초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함

▶ 최종 승인된 개정안은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피지배외국법인(CFC)과세 규정, 과세 대상 해외고정사업장 규정 외에 출국세 납부방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중 이자비용의 정의를 EU지침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sup>120)</sup> EU지침 중 그룹비율 규정과 공공목적 사회기반시설의 건축을 위해 차입한 비용을 이자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포르투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이미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현행 규정에 따르면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과 100만유로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함

■ 기존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EU지침에 맞춰 개정하여 CFC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함

▶ 기존에는 해외법인 소재국가의 실효세율이 포르투갈 실효세율의 60% 이하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CFC 과세 대상 법인에 포함하던 것에서 해외법인 소재국가의 실효세율이 포르투갈 실효세율의 50% 이하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 개정함

▶ 또한, 기존에 포르투갈 주주가 CFC 과세 대상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주에 대해 과세하던 것에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도 과세하도록 개정함

■ 포르투갈 법인의 해외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이 포르투갈 실효세율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포르투갈 법인 해외고정사업장의 소득 및 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개정함

▶ 현행 규정에서는 포르투갈 법인의 해외 고정사업장 소득 및 손실은 포르투갈 법인 과세 대상 소득 계산 시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 해외고정사업장 범위를 확대함

■ 이외에 국외전출세(exit tax) 납부방법을 EU지침에 따라 수정함

119) Portugal Draft law introducing ATAD presented to parliament(7 Feb, 2019), News IBFD

120) EU지침의 이자비용에 대한 정의는 EU Directive 2016/1164(2016)의 Article 2 (1)항에, 포르투갈 법인세법상 이자비용의 정의는 법인세법 제69조 제12항에 규정되어 있음

- ▶ 기존에는 납세자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EU지침에 따라 유럽경제구역(European conomica Area)과 협약을 맺은 국가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 17 프랑스

### 가.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및 대기업 2019년 법인세율 현행 유지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9-03회]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6일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대기업 2019년 법인세율 현행 유지안을 의회에 제출함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과 관련하여, 프랑스 내 창출된 과세 대상 서비스 관련 매출액(turnover)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
  - ▶ 2018년 3월 EU가 제안한 디지털 경제 과세 지침의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와 유사하며, EU 회원국은 동 지침에 따라 2019년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마련한 후 2020년부터 도입하여야 함<sup>121)</sup>
  - ▶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매출액이 전체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고, 프랑스 매출액이 2,5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임(프랑스 거주 및 비거주 기업 포함)
  - ▶ 과세 대상 서비스는 프랑스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페이스(플랫폼 서비스) 및 온라인 광고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인적(user) 데이터 판매를 포함함<sup>122)</sup>
  - ▶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계산 시 공제됨
  - ▶ 동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8-4호, 2018

122) 재화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 및 결제서비스, 이메일 및 인터넷을 통해 획득되지 않는 인적 데이터의 판매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8년 예산법에서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인하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다시 현행으로 유지하는 법안을 발표함(31% → 33.33%)<sup>123)</sup>
  - ▶ 2018년 제정법에서는 법인세율을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50만유로 이하 구간에는 28%를, 초과 구간에는 31%를 적용하기로 함
  - ▶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매출액이 2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0만유로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인 33.33%로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 이는 ‘노란조끼(gilets jaunes) 운동’<sup>124)</sup>에 대한 정부 응답의 일환으로 확인되며, 이후 연도의 세율 인하(2020년 28%, 2021년 26.5%, 2022년 25%)는 변동된 바 없음

## 나. 디지털 서비스세 개정안 제출

[조세동향 19-05호]

- 프랑스 국회는 2019년 5월 13일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함<sup>125)</sup>
  - ▶ 프랑스의 국회는 글로벌 매출 7억 5천만유로(한화 약 1조 8천만원<sup>126)</sup>) 이상이면서 국내 매출 2,500만유로(한화 약 333억 3천만원) 이상인 고수익 디지털업체의 매출액에 3%의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 사전에 승인한 바 있음
- 저이윤 고성장 신생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도입함
  - ▶ 과세산출 대상 수입의 회계연도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를 참고하여, 저이윤 신생기업 보호를 위해 수익 중 첫 2,500만유로(한화 약 333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디지털 서비스세 면제 대상 조항을 추가함

123)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3-07\\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3-07_fr_1.html), 검색일자: 2019. 3. 31

124) 노란조끼운동(gilets jaunes)이란 2018년 10월 21일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후 11월 17일 대규모로 전개되어 주변국(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으로 번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임. 시위대는 정부의 유류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개혁이 중산계급과 노동계급에게만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하고 있음

125) French Senate Proposes 18 Amendments to Digital Tax, Bloomberg Law: Tax(May 13, 2019)

126) 1유로 = 1,333.44원(KEB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5. 21)

- ▶ 프랑스 회사가 프랑스 외 지역에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판매한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지 않음
- ▶ 온라인 항공 예약 시스템은 항공사의 경쟁에 기여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18 핀란드

### 가. 2019 예산법안(Budget for 2019) 의결

[조세동향 19-01호]

- 핀란드 의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담은 예산법안(Budget for 2019)을 2018년 12월 21일자로 확정 의결함<sup>127)</sup>
  -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및 비용공제, 세액공제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강화 등의 혜택이 포함됨
- 투자저축계좌를 통해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자본이득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함
  - ▶ 2020년부터 특별투자저축계좌(special investment savings account)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함
  - ▶ 개인이 동 계좌를 통해 상장기업의 주식을 투자할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양도차익 등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동 계좌에서 인출하는 시점까지 이연함
  - ▶ 단, 해당 계좌에 예치 가능한 금액은 최대 5만유로로 제한함
- 개인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상향 조정함

12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2-24\\_fi\\_1.html&WT.z\\_nav=Navigation](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2-24_fi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9. 1. 28

-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각 과세표준 구간을 다소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세 과세부담을 일부 경감함

【표 11-2】 과세표준 구간 변경 내역 비교

(단위: 유로, %)

현행		개정	
소득구간	세율	소득구간	세율
17,200 이하	0	17,600 이하	0
17,200~25,700	6.00	17,600~26,400	6.00
25,700~42,400	17.25	26,400~43,500	17.25
42,400~74,200	21.25	43,500~76,100	21.25
74,200 초과	31.25	76,100 초과	31.25

- ▣ 저소득층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용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이자비용 공제 한도는 축소하는 등 개인소득세 산출구조를 일부 개편함

- ▶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비율 및 한도를 일부 인상함
  - 현행 법령상 세액공제액은 (과세소득 중 2,500유로 초과분)×12%로 계산하되 최대 1,54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이렇게 계산된 세액공제액에서 (과세소득 중 3만 3천유로 초과분)×1.65%만큼을 차감함으로써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설계됨<sup>128)</sup>
- ▶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2.2%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1,540유로에서 1,630유로까지 인상한 반면, 3만 3천유로 초과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 경감 비율도 기존의 1.65%에서 1.72%로 인상함으로써 세액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해지도록 변경함
- ▶ 개정안에서는 거주지와 직장 간의 거리가 멀어 직장 주변의 주거지를 임차하는 경우 기존에는 월 250유로까지 해당 임차료를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월 450유로로 인상함
- ▶ 납세자의 주거 취득을 위한 근저당부채무 이자와 관련하여 2019년도에 적용할 비용공제 한도를 당해 이자비용의 25%로 확정함

128) 그 결과 연간 과세소득이 약 12만 7천유로에 달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거의 0이 됨

**나.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 제외 국가 리스트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핀란드 과세당국은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CFC rule)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 명단(white list)을 2019년 1월 14일자로 발표함<sup>129)</sup>

  - ▶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 개정규정<sup>130)</sup>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CFC rule 적용 제외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임
- 유럽경제지역 이외 국가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 CFC rule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인력 및 장비, 자산 등을 보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CFC rule을 적용하지 않음
  - ▶ EEA 이외 국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해당 외국법인 소재지국과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EEA 이외 국가로 핀란드와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명단을 발표함

  - ▶ <표 II-3>과 같이 EEA 이외 지역에 소재한 총 107개 국가 리스트를 발표함

**<표 II-3> 비EEA 지역 국가 중 정보교환 협정 체결국**

구분	국가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로 제도, 조지아, 지브롤타, 그린란드, 아르메니아, 건지(Guernsey) 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저지(Jersey) 섬, 코소보, 마케도니아, 맨(Man) 섬,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129)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6\\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6_fi_1.html), 접속일: 2019. 2. 22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72753/laki-ulkomaisten-v%C3%A4liyhteis%C3%B6jen-osakkaiden-verotuksesta-valkoinen-lista/>, 검색일자: 2019. 2. 22

1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8호, 2018 참고

〈표 11-3〉 의 계속

구분	국가
북중미	아루바, 앤티가 바부다, 미국, 바하마, 앵귤라, 바베이도스, 벨리츠, 버뮤다, 케이만군도, 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 그레나다, 과테말라,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신트마르틴, 터커스 케이커스 제도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쿡 제도,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아프리카	보츠와나, 이집트,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잠비아, 세네갈, 세이셸,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오세아니아	호주, 마셜(Marshall) 제도,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자료: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72753/laki-ulkomaisten-v%C3%A4liylhteis%C3%B6jen-osakkaiden-verotuksesta-valkoinen-lista/>, 검색일자: 2019. 2. 22

#### 다. 연합정부의 조세개혁 계획 공개

[조세동향 19-06호]

- 핀란드 진보 연정은 2019년 6월 2일 과세를 강화하는 조세개혁 계획을 공개함<sup>131)</sup>
  - ▶ 사회민주당 연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지향하여 연간 7억 3천만유로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복지지출 증가에 사용하겠다고 밝힘
  - ▶ 구체적으로 주거비용 공제의 축소, 화석연료·담배·니코틴·알코올에 대한 과세 강화, 설탕세 도입, EU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면세금액 하향 조정 등이 포함됨
- 세제 개정안은 국제조세 등의 총 6개의 목적으로 나누어 목적을 설정하고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 국제 조세분야에서 세계적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중비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전 세계적인 공조에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함

131) the Finnish Government, Inclusive And Competent Finland - a socially, economicall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society, 6 June 2019

- 이에 더하여 유해조세제도 등에 해당하는 조세혜택을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 국가적인 공조 기관을 설립하여 세계적인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함
- 통합된 세원을 통해 낮은 세율과 공정과세를 이루어 기업활동, 고용, 성장, 삶의 질 및 번영을 도모함
- ▶ 외국투자펀드 등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현재 과세면제에서 5% 세율의 원천징수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함
  - ▶ 주택담보차입에 따른 이자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이외의 주택 관련 조세혜택은 폐지함
  - ▶ 과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2천만유로를 투자하여 포괄적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과세행정의 디지털화와 국제적 공조가 포함됨
-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조세개혁을 추진함
- ▶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과세의 개혁을 추진하여, 열병합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고열연료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함
  - ▶ 환경공해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에 과세를 강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함
  - ▶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22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함
- 고용과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함
- ▶ 소득세 부담 인하를 고려하지는 않겠지만, 소득 수준과 물가를 고려하여 소득과세에 대한 과세 수준을 매년 조정함
  - ▶ 국가가 운영하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2022년까지 검토하여 그 적정 규모 등을 도출할 것임
  - ▶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록 의무를 현행 1만 유로에서 1만 5천유로로 상향 조정함

- 이외에 조세를 통해 국민보건의 증진, 부동산 과세, 국가적 측면의 목적을 제시함
  - ▶ 담배, 니코틴 제품, 알코올, 설탕 등을 함유한 음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과세제도 도입을 검토함
  - ▶ 부동산 과세를 개혁하여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이 시장가치에 부합하도록 설정함
  - ▶ 어떠한 소득세과세제도의 도입도 전반적인 과세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것임

## III 아시아/오세아니아

### 1 뉴질랜드 - Tax Working Group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내용 발표

[조세동향 19-04호]

- 2019년 4월 17일 뉴질랜드 정부는 Tax Working Group(이하 TWG)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내용을 발표함<sup>132)</sup>

  - ▶ Tax Working Group은 세제의 공정성과 균형,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2017년 후반 구성한 독립적인 패널로, 뉴질랜드 세금 시스템을 검토한 후 보고서의 형태로 권고안을 작성함
  - ▶ 2019년에는 2월 말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여 뉴질랜드 정부에 제시함
- 뉴질랜드 정부는 TWG가 강조한 양도소득세 관련 권고를 채택하지 않으며, 현 정권 내에서는 재검토 계획 또한 없음을 밝힘<sup>133)</sup>

  - ▶ 권고안에서 TWG는 부동산, 토지, 주식, 사업 자산 및 지적재산권의 실현에 대한 이익 등 광범위한 과세 기반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도입을 제시하였음<sup>134)</sup>
  - ▶ TWG는 양도소득세 확대와 함께 조세 전반에서 세율 인하를 권고함으로써 수익 중립적인 조합을 꾀하였으나, 정부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전략은 진행되기 어려움
  - ▶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양도소득세 대신 투기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현행 규정을 재검토 하고, 지방 정부로 하여금 공한지(vacant land)에 과세하게 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132) New Zealand Government issues response to Tax Working Group recommendations(17 Apr. 2019), News IBFD

133) New Zealand rejects Tax Working Group recommendation to implement a capital gains tax(19 April 2019), Global Tax Alert, EY

134) New Zealand Tax Working Group Final Report recommends introduction of taxation of capital gains(25 Feb. 2019), News IBFD

- ▣ 뉴질랜드 정부는 TWG의 주요 권고사항들 중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승인함

  - ▶ 블랙홀지출<sup>135)</sup>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 1만뉴질랜드달러(한화 약 774만원)<sup>136)</sup> 가량의 선공제 안전망을 통해 신생 기업이 공제되지 않는 블랙홀지출을 5년에 걸쳐 분산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sup>137)</sup>
  - ▶ 중복된 세부담을 방지하는 배당소득과세제도(dividend imputation)를 유지함
    - 배당금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완료된 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주가 취득한 배당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
  - ▶ 마오리족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경우 17.5% 단일 세율을 유지함
  
- ▣ TWG가 도입을 반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세목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용함

  - ▶ 부유세(wealth tax), 토지세(land tax),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를 도입하지 않음
  - ▶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지 않음
  
- ▣ 2019년 중반경에 발표하는 Tax policy work programme 개정안에 TWG 권고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주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 국가적 인프라 사업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를 개발함
  - ▶ 조세회피 및 탈세를 단속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함
  - ▶ 국세청의 권한을 강화함

135) 공제되거나 감가상각될 수 없는 자본 지출("Black Hole" expenditure: Relief at last, Tax Watch: Edition 3, 2014, EY)

136) 1뉴질랜드달러 = 774.53원(KEB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5. 3)

137) New Zealand rejects Tax Working Group recommendation to implement a capital gains tax(19 April 2019), Global Tax Alert, EY

## 2 인도 - GST 개정안 발효

[조세동향 19-04호]

- 2019년부터 인도 GST 개정안이 발효됨<sup>138)</sup>
- 중소기업 부문에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과 특정 국가들에 대해 GST 면제 기준액이 변경됨<sup>139)</sup>, <sup>140)</sup>
  - ▶ 재화 공급업체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최대 1,500만루피(한화 약 2억 5,320만원)인 업체에 한해 간이과세 방법을 적용하며, 서비스(혹은 혼합) 공급업체는 GST 세율 6%<sup>141)</sup>를 적용받고 연간 매출이 최대 500만루피(한화 약 8,440만원)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 ▶ 기존 200만루피(약 3,376만원)<sup>142)</sup>이던 GST 등록 및 납세 면제 기준액을 재화 공급업체의 경우 특정 국가들에 대해 400만루피(한화 약 6,742만원)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우 일부 국가들에 대해 100만 루피(한화 약 1,688만원)로 축소함
- 건설 중인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음<sup>143)</sup>
  - ▶ 저소득자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해 GST 세율을 8%에서 매입세액공제(ITC)가 없는 1%로 인하함
    - 여기에서 저소득자 주택이란 ① 60m<sup>2</sup>(대도시) 혹은 90m<sup>2</sup>(대도시 외)의 면적이면서 450만루피(한화 약 760만원) 이내이고, ② 중앙 및 지방의 주택 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특혜 세율 8%를 적용받는 주택임
  - ▶ 이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GST 세율을 12%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없는 5%로 인하함

138) India GST amendments becoming effective(2 Apr. 2019), News IBFD

139) Implementation of various decisions taken by the GST Council for the MSME sector(7th March, 2019), Press Release,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인도)

140) India GST amendments becoming effective(2 Apr. 2019), News IBFD

141) CGST(중앙정부 부과 부가세) 3% + SGST(지방정부 부과 부가세) 3% = 6%

142) 1루피 = 16,88원(KEB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5. 3)

143) Decisions taken by the GST Council in the 34<sup>th</sup> meeting held on 19<sup>th</sup> March, 2019 regarding GST rate on real estate sector(19th March, 2019), Press Release,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인도)

### 3 일본

#### 가. 2019년 세제개정대강 각의 결정<sup>144)</sup>

[조세동향 19-01호]

□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21일 「2019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 결정하였음

- ▶ 「2019년 세제개정대강」의 주요 내용은 10월 소비세율이 10%(현행 8%)로 인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 구입 대출금액과 관련한 특별세액공제 기간 확대와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세율 인하 적용 등이 있음<sup>145)</sup>

#### 1) 소득세제

가) 주택담보대출금 특별세액공제 기간 연장

□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개인이 거주용 주택 등을 취득할 때 주택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10년에서 3년 연장된 13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 대상 주택: 취득하는 주택 등의 구입 대가의 금액 또는 비용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의 세율이 10%일 경우에 한함
- ▶ 각 과세연도(2011~2013년)의 주택담보대출금 특별세액공제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계산방식으로 산정함<sup>146)</sup>
- ▶ 일반 주택(적격 장기 우량주택 및 저탄소 인증 주택 이 외의 주택)의 경우 다음 계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세액 공제함
  - ① 주택담보대출금 등의 연말 잔액(한도: 4천만엔)×1%<sup>147)</sup>

144)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9/31taikou\\_gaiyou.pd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9/31taikou_gaiyou.pdf), 검색일자: 2019. 1. 7

145) 일본 아베 총리는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였고, 2015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이를 2017년 4월,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하였음

146) 주택담보대출금 특별 세액공제는 현행과 같이 10년 동안 공제함(납세자의 합계소득금액이 3천만엔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 부여)

147) 100엔=1,022원(KEB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1. 24)

- ② (주택의 취득가액 등 또는 비용금액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등 또는 비용의 액수에 포함되는 소비세액 등(한도: 4천만엔))×2%÷3

- ▶ 적격 장기 우량주택 및 저탄소 인증 주택의 경우 다음 계산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세액 공제함<sup>148)</sup>

- 주택담보대출금 등의 연말 잔액(한도: 5천만엔)×1%

- (주택의 취득가액 등 또는 비용금액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등 또는 비용의 액수에 포함되는 소비세액 등(한도: 5천만엔))×2%÷3

#### 나) 산림환경세 신설

▣ 산림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림환경세를 신설함

- ▶ 납세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에게 부과하는 국세로 하며, 부과징수는 시·읍·면의 개인주민세와 함께 징수함

2024년부터 개인주민세에 1인당 연 1천엔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함

## 2) 자산과세

### 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신설

▣ 인정상속인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속을 통해 특정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지속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정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중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특정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의 납세를 유예함

- ▶ ‘인정상속인’이란 사업승계 계획에 기재된 후계자로서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자임

- 사업승계 계획은 인정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의 지도 및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특정사업용 자산의 승계 전후 경영전망 등이 기재된 계획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제출된 것을 의미함

- ▶ ‘특정 사업용 자산’이란 피상속인의 사업(부동산대부사업 등은 제외) 용도에 사용되고

148) 「장기 우량주택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적격 장기 우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저탄소 건축물 해당 주택 또는 동 법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건축물로 간주되는 특정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을 의미함

있는 토지(한도: 400㎡), 건물(한도: 바닥 면적 800㎡) 및 건물 이 외의 감가상각자산 (고정자산세 또는 영업용으로 자동차세 혹은 경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등)임

- 다만, 특정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사업 폐지와 양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함
  - ▶ 인정상속인이 특정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폐지했을 경우에는 유예세액의 전액을 납부해야 함
  - ▶ 인정상속인이 특정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등을 한 부분에 대응하는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함
  - ▶ 유예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해 상속세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이자세(연 3.6%)를 납부해야 함

#### 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신설

- 인정수증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에 의해 특정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지속하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정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 중 증여에 의해 취득한 특정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가격에 대응하는 증여세의 납세를 유예함
  - ▶ ‘인정수증자’란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승계 계획에 기재된 사업의 대표권을 갖는 후계자임
  - ▶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 사업용 자산(이미 납부한 유예세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제외)을 그 증여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시의 시가에 따라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함
    - 도도현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유예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3) 법인세제

- 시험연구비 총액형 세액공제제도는 시험연구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액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sup>149)</sup>

149) 일본의 연구개발세제는 시험연구비 총액형, 시험연구비 증가분형,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제도 등이 있음

- ▶ (개정 전) 시험연구비 총액형 세액공제 비율<sup>150)</sup>
    - ① 시험연구비 비율 10% 이상인 경우: 10%
    - ② 시험연구비 비율 10%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비율 = 8% + (시험연구비 비율 × 0.2)
  - ▶ (개정 후) 시험연구비 총액형 세액공제 비율
    - ① 시험연구비 비율 8% 초과 = 9.9% + (시험연구비 비율 - 8%) × 0.3
    - ② 시험연구비 비율 8% 이하 = 9.9% + (8% - 시험연구비 비율) × 0.175
  - ▶ 시험연구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시험연구비 ÷ 평균매출액으로 계산하고, 평균매출액은 해당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임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벤처기업의 세액공제 한도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40%(현행 25%)로 인상함
-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벤처기업은 설립 후 10년 이내의 법인 중 당기 이월결손금액이 있는 법인으로 대기업의 자회사 등은 제외함

#### 4) 소비세제

##### 가) 자동차세 감면

- 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올해 10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한 자에게 최대 연 4,500엔(약 4만 6천원)을 감면하기로 함<sup>151)</sup>
- ▶ 기존 보유차량 및 경차 등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표 III-1〉 2019년 10월 이후 자가용 승용차 구입 시 적용되는 자동차세

(단위: 엔)

배기량(cc)	현행	개정	감세
1,000cc 이하	29,500	25,000	△4,500
1,000cc 초과 1,500cc 이하	34,500	30,500	△4,000
1,500cc 초과 2,000cc 이하	39,500	36,000	△3,500

15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42.htm>, 검색일자: 2019. 1. 25

151) 현재 자동차 취득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소비세와 자동차취득세(구입가격의 3%)를 부담하며, 보유 시에는 자동차중량세(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차량검사 시)와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등이 부과됨

〈표 III-1〉의 계속

(단위: 엔)

배기량(cc)	현행	개정	감세
2,000cc 초과 2,500cc 이하	45,500	43,500	△1,500
2,500cc 초과 3,000cc 이하	51,000	50,000	△1,000
3,000cc 초과 3,500cc 이하	58,000	57,000	△1,000
3,500cc 초과 4,000cc 이하	66,500	65,500	△1,000
4,000cc 초과 4,500cc 이하	76,500	75,500	△1,000
4,500cc 초과 6,000cc 이하	88,000	87,000	△1,000
6,000cc 초과	111,000	110,000	△1,000
경차	10,800	10,800	-

나) 자동차 연비과세 도입 등

- [자동차 중량세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경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중량세 면세 등의 특례조치(자동차 중량세의 에코카 감세)에 대해 경감 비율과 자동차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그 적용 기한을 2년 연장(2021년 3월 31일까지)함

〈표 III-2〉 자동차 중량세 경감 비율 인하 및 대상 범위 조정

종류	경감 비율 인하 및 대상 범위 조정
승용자동차	현행 세율을 75% 경감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감 비율을 50%로 인하 현행 세율을 50% 경감하는 자동차에 대한 경감 비율을 25%로 인하
버스·트럭 (차량 총중량 2.5톤 이하)	신차에 따른 신규 검사 후 첫 번째 차량검사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중량세 대상 범위에서 휘발유 자동차를 제외
버스·트럭 (차량 총중량 2.5톤 초과)	현행 세율을 25% 경감하는 자동차에서 제외

- [자동차 취득세] 배출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이 뛰어난 경자동차(신차 구입으로 한정)의 취득에 부과하는 자동차취득세에 관한 특례조치(자동차 취득세의 에코카 감세)의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2019년 9월 30일까지)함
  - ▶ 현행 80% 및 60%의 경감 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감 비율을 50%로 인하함
  - ▶ 현행 40%의 감면 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감면 비율은 25%로 인하함
  - ▶ 동 조치 적용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서 현행 25%의 경감 비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버스와 트럭을 제외함

〈표 III-3〉 승용차 에코카(자동차취득세) 감면 비율

구분	2020년도 연비 기준							전기자동차 등
	달성	+10%	+20%	+30%	+40%	+50%	+90%	
현재	△20%	△40%	△60%	△80%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2019~2020	△20%	△25%	△50%	△50%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자료: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9/20181221taikou.pdf](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9/20181221taikou.pdf);  
일본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jidosha/jidosha\\_fr1\\_000040.html](http://www.mlit.go.jp/jidosha/jidosha_fr1_000040.html), 검색일자: 2019. 1. 25

- [자동차세 환경성능 비율 도입 예정] 소비세가 10% 인상(현행 8%)될 경우 동시에 2019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세에 환경성능 비율을 도입할 예정임
  - ▶ 2016년 세제개정에서 2017년 4월에 환경성능 비율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어 환경성능 비율 도입도 연기된 바 있음<sup>152), 153)</sup>
- 연비 기준이 상향 조정된 환경성능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치를 충족한 경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0년 연비 기준치보다 20% 이상 연비 성능이 향상되었을 경우에는 비과세함
  - ▶ 다만,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에 취득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세율 1%를 감면하고 세율 감소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비(지방특례교부금<sup>154)</sup>)로 보전함

〈표 III-4〉 자가용 승용차 환경성능 비율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과세	2020년 연비 기준치보다 10% 이상 연비 성능 개선	① 2020년 연비 기준치보다 20% 이상 연비 성능 개선 ② 천연가스자동차(차량 총중량 3.5톤 이하)
1%	2020년 연비 기준치 충족	2020년 연비 기준치보다 10% 이상 연비 성능 개선
2%	2015년 연비 기준치보다 10% 이상 연비 성능 개선	2020년 연비 기준치 충족

152) 일본 재무부,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28taikou\\_04.htm](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6/28taikou_04.htm), 검색일자: 2019. 1. 30

153) 자동차 취득 시 과세 대상 차량(등록자동차와 경차)의 취득가액에 환경성능 비율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함

154) 지방특례교부금은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세액이 감소하는 데 따른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그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정상의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특례교부금 등 지방재정의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2017년 4월 1일 시행

- [자동차 중량세 지방양여 비율의 증가] 자동차 중량세의 양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도도부현 자동차 중량양여세를 신설하여 자동차 중량세 수입의 일부를 도도부현에 양여하기로 함
  - ▶ 국세인 자동차 중량세의 지방정부 양여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1천분의 416으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표 III-5〉 자동차 중량세 양여 비율

기간	양여 비율	도도부현에 대한 양여 비율	시정촌에 대한 양여 비율
현재	3분의 1	-	3분의 1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000분의 348	348분의 15	348분의 333
2022년도부터 2033년도까지	1,000분의 357	357분의 24	357분의 333
2034년도	1,000분의 401	401분의 68	401분의 333
2035년도 이후	1,000분의 416	416분의 83	416분의 333

다) 기타

-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임시판매장에서도 면세판매를 허용함

나.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

[조세동향 19-03회]

- 일본은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과세소득의 50%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함
-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상 이자 손금산입한도액 산정방법의 기준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변경함<sup>155)</sup>
  - ▶ 대상 이자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지급이자에서 순지급이자로 개정함
  - ▶ 동 개정사항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임

155) 대상 이자=조정과세소득 × 기준 비율

〈표 III-6〉 일본의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 이자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지급이자 (일본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등은 제외)	순지급이자(제3자 포함) (일본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등은 제외)
조정소득	이자·세금·감가상각전 소득 (국내외 배당이익금불산입액을 가산)	이자·세금·감가상각전 소득 (국내외 배당이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지 않음)
기준 비율	50%	20%
제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 관련자의 순지급이자 등의 금액이 1,000만엔 이하 · 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금액이 총이자비용 등의 금액의 50% 이하	· 순지급이자 등의 금액이 2,000만엔 이하 · 국내기업그룹의 합산 순지급이자 등의 금액이 합산조정소득의 20% 이하

자료: 일본 재무부, 세법개정안, p.11, [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an19/zeiseian19.pdf](https://www.mof.go.jp/tax_policy/publication/brochure/zeiseian19/zeiseian19.pdf), 검색일자: 2019. 4. 1

## 다. 세계개혁안 의회 심의 통과

[조세동향 19-04호]

- 일본 의회는 2019년 3월 27일 2019년 세계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안은 2019년 4월 1일부터 발효됨<sup>156)</sup>
  - ▶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 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짐<sup>157)</sup>
  - ▶ BEPS Action 4에 따라, 이자비용공제 제한규정에서 대상 이자 손금산입한도액 산정 방법의 기준 비율을 조정된 과세 소득의 50%에서 20%로 인하함<sup>158)</sup>
  - ▶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추가 및 개정됨
    -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유형자산 혹은 금융자산 및 투자 이외의 자산으로 규정함
    - 이전가격 설정방법으로 OECD Transfer Pricing Guide에 따른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추가 반영함

156) Japan 2019 tax reform bills passed(28 Mar. 2019), News IBFD

157) Japan enacts 2019 tax reform bill(1 April 2019), Global Tax Alert, EY

15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동향」, 19-3호, 2019

- 예상가격과 실제가격이 합당한 증빙 없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일본 조세 당국에 평가 권한이 있음
- 이전가격 관련 법령 적용 연한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 ▶ 본 개정안은 지주회사, 부동산 및 자원 개발 관련 회사와 같은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들이 명목회사 조사 제외 대상으로 지정함
  - 지주회사 피지배 외국법인: 관할 지역 내의 특정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의 95% 이상이 회사의 주식 또는 현금이거나, 총수익의 95% 이상이 기업들의 배당금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인 피지배 외국법인
  - 부동산 피지배 외국법인: 관할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관리 자격을 가진 피지배 외국법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피지배 외국법인
  - 자원 개발 피지배외국법인: 관할 지역 내의 석유, 천연가스 또는 기타 사회 자본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로부터 이들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동일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피지배 외국법인
-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완화 정책을 도입함<sup>159)</sup>
  - ▶ 개인소득세에서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확충함
    - 취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소득세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함
    - 이는 2019년 10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함
  - ▶ 자동차 중량세<sup>160)</sup>와 관련하여 친환경 차량에 대해 1차 차량 검사 시 감면 비율을 재검토하고, 2차 차량 검사 시에는 집중 면세 대상화함
    - 자동차세 면세 강화로 감소된 지방세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회발유세를 현행 1kℓ당 4,400엔(한화 약 46,785원)<sup>161)</sup>에서 4,700엔(한화 약 49,970원)으로 인상할 예정임
  - ▶ 시험연구를 행하는 기업의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설립 10년 이내의 당기 이월결손금액이 있는 기업의 특별세액공제 상한액을 당기 법인세액의 25%에서 40%로 확장함

159)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about\\_mof/bills/198diet/st310205g.htm](https://www.mof.go.jp/about_mof/bills/198diet/st310205g.htm), 검색일자: 2019. 4. 28

160) 자동차 보유에 과세되는 세금

161) 100엔 = 1,063.29원(KEB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5. 8)

## 4 중국

### 가. 거주자 정의 규정 개정

[조세동향 19-01호]

- 중국 국세청은 개인소득세의 거주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12월 18일 발표함<sup>162)</sup>
- 거주자 정의(「개인소득세법」 제1조) 규정을 기존 1년에서 183일로 개정함
  - ▶ (개정 전) 거주자란 중국 내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주소는 없지만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임
  - ▶ (개정 후) 거주자란 중국 내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1과세연도 동안 누적하여 만 183일 이상을 거주한 개인임
    - 중국 내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족, 경제활동 관계로 인하여 중국 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함<sup>163)</sup>
  -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나.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도입

[조세동향 19-01호]

- 중국 정부는 개인소득세의 분류과세 징수방식을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를 결합하는 방안으로 개정함<sup>164)</sup>
  - ▶ 법 개정 전까지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제2조에 개인의 소득을 11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소득에 따라 각각의 개인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을 적용하였음
    - 개인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도급경영소득과 수탁경영소득, 인적용역소득(노무

162)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60202/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1. 16

163)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16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9/05/content\\_2060671.htm](http://www.npc.gov.cn/npc/xinwen/2018-09/05/content_2060671.htm), 검색일자: 2019. 1. 28

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음

- 2019년 1월 1일부터 거주자가 취득한 근로소득, 인적 용역소득(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을 항목별 분류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하기로 함<sup>165), 166)</sup>
  - ▶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예납하고, 종합과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을 수취한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표 III-7〉 중국의 종합소득 세율

(단위: 위안, %)

등급	과세소득	세율
1	36,000 이하	3
2	36,000 초과 ~ 144,000 미만	10
3	144,000 초과 ~ 300,000 미만	20
4	300,000 초과 ~ 420,000 미만	25
5	420,000 초과 ~ 660,000 미만	30
6	660,000 초과 ~ 960,000 미만	35
7	960,000 초과	45

주: 1위안=166원(KEB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1. 28)

자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9/05/content\\_2060671.htm](http://www.npc.gov.cn/npc/xinwen/2018-09/05/content_2060671.htm), 검색일자: 2019. 1. 28

#### 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통지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중국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만 과세하는 세금 감면 통지를 2019년 1월 17일 발표하였음<sup>167)</sup>

165) 노무보수소득은 자문 중개 등의 서비스나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임

166) 경영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은 기존대로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항목별 구분 계산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함

167)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014090/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2. 18

- ▶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 대상 소득 중 100만원 이하의 25%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20%의 저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함<sup>168)</sup>
  - ▶ 100만원안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세 대상 소득은 50%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함
    - 중국의 기본 법인세율은 25%임
  - ▶ 동 세제혜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 ▶ ① 연 과세 대상 소득이 300만원 이하
  - ▶ ② 종업원수 300명 이하
  - ▶ ③ 자산총액 5천만원 이하

#### 라.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면제금액 확대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중국 재무부는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19년 1월 19일 발표함<sup>169)</sup>
- ▶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증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현행 월 매출액 3만원안에서 10만원안으로 상향 조정함<sup>170)</sup>
  - ▶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은 월 또는 분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당 1회 선택 가능하며 변경은 불가능함
    - 익월 15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월평균 임대소득이 10만원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치세를 면제함

168) 2019년 2월 26일 1위안=167원(KEB하나은행)

169)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014975/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2. 19

170) 중국의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와 유사한 개념임

□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치세영수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증치세 일반영수증, 증치세전자일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마. 증치세 세율 인하 발표**

[조세동향 19-03호]

□ 중국 리커창 총리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증치세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함<sup>171)</sup>

▶ 제조업은 현재 16%에서 13%로 인하되며, 건설업 및 운수업 등은 현재 10%에서 9%로 인하됨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됨

□ 증치세는 중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정비 용역 등의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의 변경은 다음과 같음

〈표 III-8〉 중국의 증치세율 인하

종전 세율	인하 후 세율	증치세 대상 업종
16%	13%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일반화물수입 등
10%	9%	①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등 ② 다음의 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도서·신문·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등
6%	6%	서비스업, 무형자산 판매 등

자료: IBFD, China(People's Rep.) Key Features, Country Key Features IBFD, 검색일자: 2019. 4. 1

171) 국무원, [http://www.gov.cn/premier/2019-03/16/content\\_5374314.htm](http://www.gov.cn/premier/2019-03/16/content_5374314.htm), 검색일자: 2019. 3. 22

**바. 미국산 자동차 및 예비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연기**

[조세동향 19-04회]

- 2019년 3월 3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자동차 및 예비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연기를 계속하기 위한 공고(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9, 1호)를 발표함<sup>172)</sup>

  - ▶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7월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동해 9월부터 일부 자동차 예비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음
  - ▶ 2018년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경제무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3개월 간 추가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sup>173)</sup>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치에 대한 연장을 발표함
  
- 공고는 2019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아래 조항에 대한 추가 관세 유보는 지속됨<sup>174)</sup>

  - ▶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 5호에 따라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 10호의 별첨<sup>175)</sup>에 나열된 28종 차량
  - ▶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 7호에 따라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 10호의 별첨<sup>176)</sup>에 열거된 116종 차량
  - ▶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 8호에 따라 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관세세칙위원회 공고 2018, 10호의 별첨<sup>177)</sup>에 열거된 67개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172) China(People's Rep.) Imposition of additional tariffs on cars and spare parts from United States to be postponed(1 Apr. 2019), News IBFD

173)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t20181214\\_3093439.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t20181214_3093439.html), 검색일자: 2019. 4. 29

174)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t20181214\\_3093439.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t20181214_3093439.html), 검색일자: 2019. 4. 29

175)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P020181214637069015673.pdf>, 검색일자: 2019. 4. 29

176)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P020181214637069345788.pdf>, 검색일자: 2019. 4. 29

177)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12/P020181214637070062288.pdf>, 검색일자: 2019. 4. 29

**사.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세율 인상 발표**

[조세동향 19-05호]

- 중국 관세세척위원회는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5월 13일 발표함<sup>178)</sup>
  - ▶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세율 인상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모두 5,140개임
  - ▶ 품목별로 현행 5~10%에서 10~25%의 관세율로 부과될 예정임
  -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됨

〈표 III-9〉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품목

세율	품목 수	품목
25%	2,493개	과일, 견과류, 생선, 설탕 등
20%	1,078개	인산염, 황화물, 재활용 폐지 등
10%	974개	파종류, 곤충, 냉동 감자 및 콩류 등
5%	595개	질소, 리튬, 알칼리 금속 등

자료: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5/t20190513\\_3256788.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5/t20190513_3256788.html), 검색일자: 2019. 5. 23

**아.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법인세 감면정책 발표**

[조세동향 19-06호]

- 중국 재무부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설계 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발표함<sup>179)</sup>
  -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익을 낸 기업으로 적격 요건을 충족한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설계 기업을 대상으로 함

178) 재무부,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5/t20190513\\_3256788.html](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5/t20190513_3256788.html), 검색일자: 2019. 5. 16

179) 중국 재무부,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5/t20190521\\_3261938.html](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5/t20190521_3261938.html), 검색일자: 2019. 6. 20

- 적격 요건: 선의 넓이가 0.8mm 이하의 집적회로 제품 생산기업, 투자금액이 80억 위안을 초과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기업<sup>180)</sup>
- ▶ 2019~2020년은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후 3개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50%를 감면하기로 함(법인세율을 50% 인하하여 12.5% 세율을 적용)

### 자. 제조업 지원을 위한 고정자산 가속상각 확대 시행

[조세동향 19-06호]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가속상각 적용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기로 함<sup>181)</sup>
- ▶ 기존에 고정자산의 가속상각이 가능한 업종은 ① 생물의약품 제조업, ② 전문 설비 제조업, ③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운수설비 제조업, ④ 측정기계 제조업, ⑤ 전자설비 제조업 등에만 시행되었으나, 제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고정자산 가속상각제도를 전 제조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
-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5 싱가포르 - 「2019년도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싱가포르 재무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2019년 2월 18일 발표함<sup>182)</sup>
-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3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이며, 예산안 세법 개정 부속서에는 소득세, 법인세, 경유세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됨

180)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128416/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6. 27

181) 중국 국가세무총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300874/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6. 20

182) 싱가포르 정부,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9/budget-speech/a-introduction#pa](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9/budget-speech/a-introduction#pa), 검색일자: 2019. 2. 19

- ▣ [소득세] 싱가포르 건국 200주년 기념(Bicentennial Bonus)으로 2019년 납부할 개인소득세의 50%를 환급하기로 함

  - ▶ 개인소득세 환급 최대 한도는 200싱가포르달러(약 17만원)로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여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소득세 환급(Personal Income Tax Rebate)제도임<sup>183)</sup>
  
- ▣ [법인세] 정부의 자동화 지원정책(Automation Support Package)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감면(Investment Allowance)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함

  - ▶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화 장비 투자비용의 100%를 감면하며, 최대 1천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지원함
  - ▶ 감면기간은 2019년 3월 31일(2016년 예산안에 명시)에서 2년 연장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임
  
- ▣ [경유세 등] 경유세(Diesel Taxes)를 인상하고 특별세(Annual Special Tax)를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개정을 단행함

  - ▶ 경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용 경유, 산업용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기존 1리터당 0.1싱가포르달러에서 0.2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됨
  - ▶ 경유세 인상에 따라 경유용 일반차량과 택시에 부과되는 특별세(Annual Special Tax)를 다음과 같이 인하함
    - EuroIV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6개월마다 배기량(cc)에 0.625싱가포르달러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525싱가포르달러를 하한으로 하여 특별세를 납부해야 함(현재는 575싱가포르달러)
    - EuroV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6개월마다 배기량(cc)에 0.2싱가포르달러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100싱가포르달러를 하한으로 하여 특별세를 납부해야 함(현재는 150싱가포르달러)
    - 경유택시는 6개월마다 1,700싱가포르달러의 특별세를 납부해야 함(현재는 2,125싱가포르달러)
  - ▶ 경유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경유차량에 대해 도로세(road tax)를 환급해주기로 함
    -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 도로세 100% 환급

183) 2019년 2월 26일 1S\$=828원(KEB하나은행)

- 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도로세 75% 환급
- 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 도로세 50% 환급

- [기타] 여행자 휴대품 소비세(GST) 면세 한도(외국에 48시간 이상 체류 시)를 현재 60싱가포르달러에서 50싱가포르달러로 인하함
  - ▶ 외국에 48시간 미만 체류 시에는 150싱가포르달러에서 100싱가포르달러로 인하됨
  - ▶ 동 개정사항은 2월 19일 자정부터 적용됨

## 6 호주

### 가. 2019/20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9-05호]

- 호주 정부는 저소득 및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 중소기업의 세율 인하, 즉시상각 의제 규정 등의 개정이 포함된 「2019/20 예산안」을 2019년 4월 2일 발표함<sup>184)</sup>
  -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함
  - ▶ 연간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7.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됨
  - ▶ 즉시상각의제(instant asset write-off) 규정의 일몰기한 및 적용 대상 기업, 자산 취득 가액 한도를 확대함

#### 1) 개인소득세

- 호주 정부는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4단계 초과누진세율체계에서 2024/25과세연도에는 3단계로 변경하고, 2024년까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구간도 조정하여 저소득 및 중산

184) 호주 정부, <https://www.budget.gov.au/2019-20/content/overview.htm>, 검색일자: 2019. 5. 16

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함

- ▶ 2022/23과세연도부터 4단계 누진세율 중 19%와 3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고, 2024/25과세연도에는 32.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적용세율을 2.5%p 인하할 예정임<sup>185)</sup>
- ▶ 2024/25과세연도부터 37%의 소득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19%, 30%, 45%의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변경될 예정임
  - 저소득 및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2024/25과세연도에는 상위 1% 납세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납부세액이 전체 소득세 세수의 17%, 상위20% 납세자가 59.5%를 부담하도록 계획됨

〈표 III-10〉 호주의 연도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개정 계획

(단위: AUD)

2018/19~2021/22과세연도		2022/23~2023/24과세연도		2024/25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8,200	0	~18,200	0	~18,200	0
18,201~37,000	19	18,201~45,000	19	18,201~45,000	19
37,001~90,000	32.5	45,001~120,000	32.5	45,001~200,000	30
90,001~180,000	37	120,001~180,000	37	200,001~	45
180,001~	45	180,001~	45	-	-

□ 과세소득이 12만 5,333호주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한도를 확대함

- ▶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는 연간 과세소득이 12만 5,333호주달러 이하인 자에 한해 최대 530호주달러를 한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음
- ▶ 2019/20 과세연도부터 과세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255달러에서 최대 1,080호주달러(단독소득가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과세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액은 〈표 III-11〉과 같음
  - 맞벌이가구(dual income families)의 경우 최대 2,160호주달러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 ▶ 2022/23과세연도에는 연간 과세소득이 6만 6,667호주달러 이하인 자에 대해 저소득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가 645호주달러를 한도로 시행됨<sup>186)</sup>

185) 1AUD = 822원(KEB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 2019. 5. 27)

〈표 III-11〉 저소득 및 중산층 세액공제액(단독소득가구 기준)

(단위: AUD)

과세소득	2018/19	2019/20~2021/22
0~37,000	200	255
37,001~48,000	200 + (과세소득 37,000) × 3%	255 + (과세소득 37,000) × 3%
48,001~90,000	530	1,080
90,000~125,333	530 (과세소득 90,000) × 1.5%	1,080 (과세소득 90,000) × 1.5%

자료: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direct-taxes/income-tax-for-individuals/personal-income-tax-plan/>, 검색일자: 2019. 5. 28

## 2) 법인세

- 연간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27.5%에서 2021/22 과세연도에 25.0%로 인하될 예정임
  - ▶ 2018/19 예산안에서는 2025/26과세연도부터 26.0%, 2026/27과세연도부터 25.0%로 점차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계획보다 5년 빠르게 중소기업의 세율을 인하하기로 함
    -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30.0%로 유지됨
  
- 즉시상각의제(instant asset write-off) 규정의 일몰기한 및 적용 대상 기업, 자산 취득가액 한도가 확대되었음
  - ▶ 2018/19과세연도에 연간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2만호주달러 이하 자산 취득에 대한 즉시상각 일몰기한은 2019년 6월 30일이었으나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됨
  - ▶ 소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1천만호주달러에서 5천만호주달러로 확대하고, 자산 취득가액 한도도 3만호주달러로 인상함

186)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direct-taxes/income-tax-for-individuals/personal-income-tax-plan/#Newlowincometaxoffset>, 검색일자: 2019. 5. 28

〈표 III-12〉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개정

구분	2018/19과세연도	2019/20과세연도
일몰기한	2018년 6월 30일~2019년 6월 30일	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소기업 매출액 기준	1천만호주달러	5천만호주달러
구매자산 허용금액 <sup>1)</sup>	2만호주달러 * 2018년 7월 1일~2019년 1월 28일 구매자산	3만호주달러 * 2019년 4월 2일~2020년 6월 30일 구매자산

주: 1) 2019년 1월 29일~2019년 4월 1일 구매자산의 경우 2만 5천호주달러까지 즉시상각의제가 허용되며,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은 1천만호주달러 미만을 충족하여야 함

**나. 급여신고제(Single Touch Payroll)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조세동향 19-06호]

- 모든 사업장은 임직원의 급여 및 연금(superannuation) 정보를 급여신고제(Single Touch Payroll: STP)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sup>187)</sup>
  -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은 급여 및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임직원 급여지급 내역 및 연금정보를 실시간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sup>188)</sup>
  - ▶ 호주의 급여신고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임직원 20명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 국세청 발표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됨

**7 홍콩 - 「2018/19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9-03호]

- 홍콩 재무장관은 「2018/19 예산안」을 2019년 2월 27일 발표함<sup>189)</sup>
  - ▶ 예산안의 주요 세법 개정으로는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사업

18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General/Gen/Single-Touch-Payroll-starts-1-July---small-employers-are-you-ready/> 검색일자: 2019. 7. 1

188) 호주는 더 이상 수기로 기록하는 급여대장 세무신고가 허용되지 않음

189) 홍콩 정부, <https://www.budget.gov.hk/2019/eng/index.html>, 검색일자: 2019. 3. 22

소득세(profits tax)와 근로소득세(salaries tax)의 부담 완화, 기업의 사업등록비(business registration fees) 등의 면제 등이 있음<sup>190)</sup>

□ [소득세율 변경] 홍콩의 소득세율은 현행 4단계 초과누진세율 체계에서 2018/19과세연도에는 5단계로 변경하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함

▶ 가장 낮은 2%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5천홍콩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함께 세율이 인하되었음<sup>191)</sup>

〈표 III-13〉 개정된 홍콩의 소득세율

(단위: 홍콩달러, %)

2017/18과세연도		2018/19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45,000	2	~ 50,000	2
45,001 ~ 90,000	7	50,001 ~ 100,000	6
90,001 ~ 135,000	12	100,001 ~ 150,000	10
135,001 ~	17	150,001 ~ 200,000	14
-	-	200,001 ~	17

□ [소득세 감면] 2018/19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 일시적인 세액 감면을 실시하며, 납부세액의 75%를 감면함

▶ 한시적으로 2만홍콩달러(한화 약 290만원)를 감면 한도금액으로 하여 감면을 시행하며, 약 19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7/18과세연도는 3만홍콩달러였으나 2018/19과세연도의 감면한도금액은 1만홍콩달러 하향 조정되었음

- 홍콩은 예산안에 일시적인 소득세 감면을 발표하지만 거의 매년 소득세 감면을 부여하고 있음

□ [사업등록비 면제] 기업의 지원 및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등록비 등을 면제하기로 함

190) 홍콩 정부,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1902/27/P2019022700482.htm>, 검색일자: 2019. 3. 29

191) 2019년 3월 29일 1HKD=144원(KEB하나은행)

- ▶ 홍콩의 기업은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 사업등록비와 사업등록부담금(business registration levy)을 사업등록소에 납부해야 하는데 동 개정으로 본사 및 지점의 사업등록증 1년 등록 시 납부해야 할 사업등록비를 면제하기로 함
  - 등록된 기업은 매년 또는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함
- ▶ 2019년 4월 1일부터 사업등록비를 면제함으로써 약 1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정부 세수입은 29억홍콩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I-14〉 홍콩의 사업등록비와 사업등록부담금

(단위: 홍콩달러)

사업 개시일	본사 사업등록증(商業登記證)						지점 사업등록증(分行登記證)					
	1년 등록 시			3년 등록 시			1년 등록 시			3년 등록 시		
	사업 등록 비	사업 등록 부담금	합계	사업 등록 비	사업 등록 부담금	합계	사업 등록 비	사업 등록 부담금	합계	사업 등록 비	사업 등록 부담금	합계
2019. 4. 1~	0	250	250	3,200	750	3,950	0	250	250	116	750	866
2017. 4. 1.~ 2019. 3. 31.	2,000	250	2,250	5,200	750	5,950	73	250	323	189	750	939
2016. 4. 1.~ 2017. 3. 31.	0	250	250	3,200	750	3,950	0	250	250	116	750	866
2014. 4. 1.~ 2016. 3. 31.	2,000	250	2,250	5,200	750	5,950	73	250	323	189	750	939

자료: 홍콩 세무국,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 IV 국제기구

### 1 OECD

#### 가. 법인세 통계(Corporate Tax Statistics) 발표

[조세동향 19-01호]

- OECD는 2019년 1월 법인세 통계(Corporate Tax Statistics)를 발표함<sup>192)</sup>
  - ▶ 동 보고서는 각 국가의 법인세제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BEPS 프로젝트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sup>193)</sup>
-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 BEPS 제휴국 및 이외 국가의 ① 법인세 수입, ② 법인세 최고세율 ③ 법인세 유효세율 분석 ④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제도 관련 법인세 감면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제공함

#### 1) 법인세 수입

- 법인세 수입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2016년 기준 88개 국가의 법인세 수입 평균 비중은 총세수입의 13.3%, GDP의 3.0%를 차지하며, 개발도상국가들의 법인세 수익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OECD 회원국의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평균 9%로 중남미 지역 평균 15.4% 및 아프리카 지역 평균 15.3%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192) OECD, <http://www.oecd.org/tax/corporate-tax-remains-a-key-revenue-source-despite-falling-rates-worldwide.htm>, 검색일자: 2019.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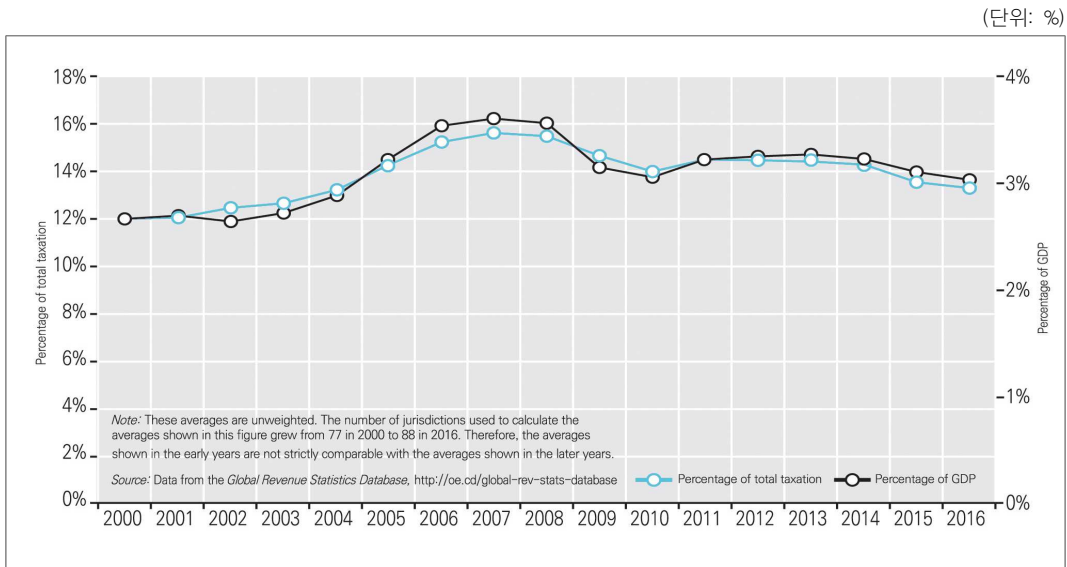
193) BEPS 프로젝트 Action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2015)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BEPS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여 OECD에 새로운 법인세 통계자료를 공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집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의 법인세 수입은 총세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였음
-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평균 2.9%로 중남미 지역 3.4%에 비해 낮으나 아프리카 지역 평균 2.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우리나라의 2016년 법인세 수입은 총세수의 13.6%와 GDP의 3.6%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법인세 수입은 세계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 2000~2016년도 기간 동안 GDP 대비 평균 총수입 비중은 2007년에 3.6%로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2%와 3.1%로 하락하였음

[그림 IV-1] 법인세 총수입 비중(총세수입 및 GDP 차지 비중)



자료: OECD, 『법인세 통계』, 2019. 1, p. 3

2) 법인세 최고세율

- 2018년 기준 94개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s)은 21.4%로 2000년도 28.6% 대비 7.2%p 감소하였음

- ▶ 94개국 중 76개 국가가 2000년도 대비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였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도 23.7%로 2000년도 32.2%에 비해 8.5%p 인하되었음
  - ▶ 94개국 중 18개 국가는 30%의 이상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규정한 국가이며, 인도는 48.3%의 가장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규정한 나라임
  -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sup>194)</sup>로 조사 대상국 94개국 중 27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 우리나라를 비롯한 총 6개 국가가 2017년도에 비하여 2018년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반대로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10%p와 13.07%p 인하하였음
- 법인세는 누진세율 형태로 적용되므로 다국적 기업은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저세율국으로 세원을 이전하려는 유인이 존재함
- ▶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sup>195)</sup>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게 규정하면서 다국적 기업에 특례 제도를 제공하여 실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조세특례제도는 BEPS Action 5에 따라 2018년도 중에 개정 및 폐지되도록 함

### 3) 법인세 유효세율 분석

-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고려할 때, 각 국가의 법인세 법정세율보다는 법인세 유효세율 비교를 통해 투자할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음
- ▶ 법인세 유효세율(Corporate effective tax rates)은 회계상 감가상각 처리방식,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포함한 조세특례제도의 효과가 반영되어 실제 법인세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말함
- 동 보고서에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각 국가의 법인세 규정에 따른 4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유효세율을 산정하였으며,<sup>196)</sup> 유효세율과 법정세율 차이를 통해 해당 조세

194) 지방소득세 포함

195) 몰타, 세인트빈센트 및 그레나딘 제도, 몬세트라트, 세이셸, 바베이도스, 퀴라소, 몰디브, 모리셔스, 안도라가 해당됨

196) 유효한계세율(the effective marginal tax rate), 유효평균세율(the effective average tax rate), 자본비용, 초기 투자금액 중 자본 공제액의 순현재가치(the net present value of capital of allowances as a share of the initial investment)의 4가지 지표를 고려한 전진적 산정방식(forward-looking)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산정방

특례제도의 효과를 비교함

- ▶ 2017년 기준 조사 대상국 74개국 중 55개국이 가속 감가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평균세율을 1.8%p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임
    - 특히, 가장 큰 감소 효과를 보인 나라는 미국과 인도로, 유효평균세율을 각 4.8%p, 3.8%p 인하한 효과를 보임
  - ▶ 조사 대상국 74개국 중 벨기에, 브라질,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터키 총 5개 국가만이 자본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를 허용하며, 이들은 법정세율 대비 유효평균세율을 1.3~4.4%p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임
  - ▶ 조사 대상국 전체 법인세 평균유효세율은 20.5%로 평균법정세율 21.6%보다 1.1%p 낮은 수치를 보임
  - ▶ 우리나라의 평균유효세율은 23.2%로 평균법정세율 24.2%에 비해 1%p 낮은 세율을 보이며, 전체 조사 대상국 차이율 1.1%p와 큰 차이가 없음
- 법인세 (법정)세율이 높은 국가가 가속 감가상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OECD 회원국에서 뚜렷하게 보임

4)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제도 관련 법인세 감면제도

- 조사 대상국 대부분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direct funding) 및 세금 감면(tax relief)의 두 가지 정책을 혼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임
- ▶ 2016년 연구개발 관련 조사 대상국의 정책 비중은 재정지원 54%(520억 달러), 세금 감면 46%(450억달러)를 차지하며, 이는 2006년에 비하여 세금 감면 비중이 10% 증가 (재정지원 10% 감소)된 수치임
    -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세금 감면정책을 통해 전체 연구개발 장려정책의 80% 이상을 지원함
    - 우리나라는 2016년 조사 대상국 중 5번째로 연구개발 장려정책 규모가 큰 나라이며, 지원 규모는 총 4조 5,031억원으로 이 중 재정지원이 2조 2,530억원(50% 비중), 세금 감면이 2조 2501억원(50% 비중)을 차지함

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ECD Taxation Working Paper No.38(Hanappi, 2018)을 참조

- ▶ 2018년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개의 국가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19개국)에 비해 증가된 수치임
  - ▶ 연구개발 세금 감면의 적용 범위가 완화되고 기업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세금 감면 총규모는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마지막으로 2018년에 시행 중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제도의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IP제도가 법인세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인세통계 다음 호에 신기로 함
- ▶ 각 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금 감면제도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BEPS Action 5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 실질적 활동 요건<sup>197)</sup>을 요구하고 있음
    - 과거에 많은 국가들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조세 감면 경쟁을 벌임에 따라 BEPS 문제점을 야기하였음
  - ▶ 2018년에 OECD 글로벌포럼은 41개 국가의 65개의 지적재산권 관련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BEPS Action 5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3개의 제도를 폐지하였고, 25개의 제도가 개정 또는 폐지가 진행 중임

## 나. BEPS Action 6,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OECD는 2019년 2월 14일 BEPS 프로젝트 Action 중 최소 기준인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sup>198)</sup>
- ▶ BEPS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는 15개의 Action 중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

197) 조세상 혜택과 연구개발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실질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봄

198) OECD, <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beps-peer-review-report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and-preventing-treaty-shopping.htm>, 검색일자: 2019. 2. 19

-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도 최소 기준에 해당함

□ Action 6와 관련하여 116개 국가의 조약쇼핑에 대한 최소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한 상호검토 보고서 내용을 공개함

▶ 조약쇼핑 관련 최소 기준은 조세조약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sup>199)</sup>

- ① 조세조약 서문에 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조약쇼핑 등을 통한 부당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도입
- ②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

- (i) 혜택의 제한규정(Limitation-On-Benefits: LOB)<sup>200)</sup>과 주목적 근거규정(Principal Purpose Test: PPT)<sup>201)</sup>을 조세조약에 동시 도입
- (ii) 주목적 근거규정(PPT) 단독 도입
- (iii) 혜택의 제한규정(LOB) 도입과 함께 도관금융약정을 통한 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규정 도입

□ 116개국의 2018년 조세조약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의 조세조약이 Action 6 최소 기준에 부합됨

- ▶ 이는 2018년 7월 1일 이후로 발효되는 다자간 협약의 효과로 기인한 것이며, 다자간 협약이 최소 기준 이행을 위한 우선적 수단임을 나타냄
- ▶ 한국에 대해서는 조약협정을 맺고 있는 93개 국가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BEPS Inclusive Framework 참여국이 조약쇼핑 방지규정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조약 국가 간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19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조약 남용방지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요약자료, 2016. 9

200)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LOB)규정은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조정의 대상으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인(person)을 조세조약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도관(conduit) 형태의 인격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음. 홍성훈·정훈·홍민욱,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세법연구 15-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01) 주목적 근거규정(PPT)은 거래 또는 약정의 주요 목적이 조약의 목적이거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을 말하며, 따라서 조세회피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Action 14와 관련하여 5조에 속한 국가들(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총 8개국)에 대한 상호검토 1단계 보고서 내용을 발표함
  -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 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상호합의 절차(MAP)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현황 등을 평가함
  
- 전반적으로 평가 대상국이 Action 14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sup>202)</sup>
  - ▶ 아이슬란드는 최소 기준 요건 중 절반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절반 이하 기준에 부합함
  - ▶ 평가 대상국 대부분 국가들이 상호합의 절차(MAP)를 통해 분쟁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며, MAP 이행 수준은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MAP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은 2019년 2월 2단계 상호검토 업무가 착수될 예정임

**〈표 IV-1〉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일정 및 검토 국가**

구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10조
1단계 착수	2016-12	2017-03	2017-07	2017-12	2018-04	2018-08	2018-12	2019-04~ 2019-12
2단계 착수	2018-09	2018-10	2019-02	2019-08	2019-10	미정	미정	미정
검토 국가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루나이 등 26개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칠레	불가리아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헝가리	콜롬비아	중국	

202)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oecd-releases-iceland-peer-review-report-on-implementation-of-beps-action-14-minimum-standard>, 검색일자: 2019. 2. 25

〈표 IV-1〉의 계속

구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10조
검토 국가	스위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홍콩	브루나이 등 26개국
	영국	리히슈테인	노르웨이	몰타	루마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파푸아 뉴기니	
		스웨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	사우디 아라비아	

자료: OECD, <http://www.oecd.org/tax/beps/beps-action-14-peer-review-assessment-schedule.pdf>, 검색일자: 2019. 2. 25

**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의문서 발표**

[조세동향 19-02호]

- OECD는 2019년 2월 13일 BEPS프로젝트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공동 협의문서(public consultation document)를 발표함<sup>203)</sup>

  - ▶ BEPS Inclusive Framework는 2019년 3월 13~14일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된 공개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전에 협의문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견해를 구하고자 함
  
- BEPS Inclusive Framework는 2018년 3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 관련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이익배분 및 과세준거점(nexus) 기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 ▶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장기 해결책은 2020년 최종 보고서에 발표하기로 함
  
- 이익배분과 과세준거점 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①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 ② 마케팅 무형자산<sup>204)</sup>(marketing intangibles), ③ 상당한

203) OECD,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possible-solutions-to-the-tax-challenges-of-digitalisatio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02-2019&utm\\_term=demo](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possible-solutions-to-the-tax-challenges-of-digitalisatio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02-2019&utm_term=demo), 검색일자: 2019. 2. 25

204) OECD가 발표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보고서(2017)상의 동일한 의미로, 마케팅 무형자산이란 마케팅 활동과

경제적 실질(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기준임

- ▶ 사용자 참여 기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고(高) 디지털화된 사업에 대해 실제 사용자의 참여 데이터가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기반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은 다국적 기업이 고객 기반 데이터 및 기타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도달(reach into)할 수 있는 관할권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 상당한 경제적 실질 기준은 비거주기업이 디지털기술 및 기타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관할권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다국적 기업의 BEPS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안(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으로 ① 소득산입규정(income inclusion rule), ② 세원잠식세(tax on base eroding payments)를 제안함

- ▶ 소득산입규정은 법인의 소득이 최소 세율로도 과세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주주<sup>205)</sup>에게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세금의 지분율만큼 요구하는 규정임
- ▶ 세원잠식세는 소득 원천국에 납부하는 세액이 유효세율 또는 최저한세 이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제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인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임

□ 동 보고서는 정책 설계단계에서의 검토된 규정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임을 유의해야 함

- ▶ 상기 제안 규정들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기술적 의견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는 2020년에 발표될 예정임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판촉에 도움을 주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한 상업적 가치를 갖는 상표 및 상호, 고객 리스트, 유통망, 고객 데이터 등을 말함

205)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율(25%)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함

라. Taxing Wages 2019 보고서 출간

[조세동향 19-04호]

- OECD는 2019년 4월 11일 『Taxing Wages 2019』 보고서를 출간함<sup>206)</sup>

  - ▶ OECD는 Taxing Wages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며, 회원국의 근로소득과세 현황을 가구형태별 및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여 국가별 비교 자료를 제시함
  - 가구형태별 기준은 독신, 2자녀 편부모, 2자녀 외벌이, 2자녀 맞벌이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함
  - ▶ 근로소득과 관련된 조세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tax)가 있으며, 가계현금급여<sup>207)</sup>와 더불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와 지불급여세가 있음
  
- 국가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하기 위해 조세격차(tax wedge)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조세부담 수준이 큼

  - ▶ 조세격차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비용(labour costs)과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소득(net take-home pay)의 차이로 측정되며, 실효세율로 표현되기도 함
  
- OECD 회원국의 2018년 독신-평균근로소득 수준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36.1%로 나타남

  - ▶ 전년 대비 0.16%p 감소한 수치이며, 4개년 연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2.54%p), 미국(-2.19%p), 헝가리(-1.11%p), 벨기에(-1.09%p)가 전년 수치 대비 큰 하락을 보였으나, 22개 국가는 0.5%p 미만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 우리나라의 2018년 독신-평균소득 수준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23%이며, 전년 대비 0.49%p 상승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OECD 회원국의 2018년 2자녀 외벌이-평균근로소득 수준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26.6%로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독신가구 36.1%보다 낮은 조세를 부담함

206) OECD, <http://www.oecd.org/tax/taxing-wages-20725124.htm>, 검색일자: 2019. 4. 19

207) 우리나라의 자녀장려금, 아동수당과 같이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마이너스 조세에 해당됨

- ▶ 동 그룹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조세부담률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39.4%)이며, 이탈리아(39.1%)를 포함하여 유럽 국가들이 37~38% 사이의 조세부담률을 보임
  - ▶ 반대로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1.9%)이며, 이어서 칠레(7.0%)와 스위스(9.8%)가 있음
  - ▶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2자녀 외벌이의 조세부담률이 독신가구의 수치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경우 2자녀 외벌이-평균근로소득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21%로, 독신가구의 조세부담률 23%보다 2%p 낮은 수치를 보임
    -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2자녀 외벌이의 조세부담률이 독신가구에 비해 15%p 이상 낮음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OECD 회원국의 독신-중위근로소득가구<sup>208)</sup>의 과세 현황을 다루었으며, 이들의 2017년 조세부담률은 34.3%로 평균근로소득 조세부담률 36.2%에 비해 2%p 낮은 수치를 보임
- ▶ 2017년 OECD 중위근로소득은 평균근로소득의 80.8%에 해당하는 수준임
  - ▶ 칠레와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중위근로소득 기준 조세부담률은 평균소득 기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두 조세 부담률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두 조세부담률 간의 차이는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적용하는 소득세 과세구조의 누진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 중위근로소득 기준 조세부담률은 20.7%로 평균 근로소득 기준(22.5%)에 비해 1.8%p 낮은 수치를 보임

208) 중위근로소득(median wage)은 급여 소득 분포 중 중간점(50번째 백분위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내 소득 불평등 차이가 고려된 수치임. 중간 근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에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음. 참고로 평균근로소득은(average wages)는 정규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총합을 정규 근로자 수로 나눈 수치임

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발표

[조세동향 19-04호]

- OECD는 2019년 3월 22일 “온라인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 징수에 관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The role of digital platforms in the collection of VAT/GST on online sales)” 보고서를 발표함<sup>209)</sup>

  - ▶ 본 보고서는 OECD에서 2017년에 발표한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sup>210)</sup>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많은 국가들이 OECD 지침 등<sup>211)</sup>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온라인 거래(cross-border online sales)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음

  - ▶ 현재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규모는 2조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4조 5천억달러(이 중 1조달러는 국제거래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판매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당 납세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지움으로써 B2C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 국가 과세당국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할 경우의 고려사항을 제공하며, 이 외 과세당국에 대한 판매사업자 과세정보 제출 등 기타 납세 협조 내용을 포함함
    - 플랫폼사업자의 대상 요건, 적용 범위, 적용 시 필요한 정보, 부가세 징수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 국가별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플랫폼사업자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옵션 모음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도가 효과적으로 도입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09) OECD, <https://www.oecd.org/tax/global-tax-community-welcomes-new-measures-to-enlist-online-marketplaces-in-the-collection-of-vat-gst-in-e-commerce.htm>, 검색일자: 2019. 4. 19

210) 동 보고서는 국제거래에서 용역 또는 무형자산의 공급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을 다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7-11호, 2017

211) OECD의 “VAT/GST지침” 및 “BEPS Action 1 보고서” 보고서를 말함

- ▶ 플랫폼사업자의 납세의무는 국가의 정책, 입법 환경, 행정절차, 실무행정, 과세당국의 우선순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달리 규정될 수 있음

## 바. 디지털 경제에서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06호]

- OECD는 2019년 5월 31일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보고서<sup>212)</sup>를 발표함<sup>213)</sup>
  - ▶ OECD는 2015년 ‘BEPS Action 1’의 보고서 발표 이후 2018년 3월 16일 중간 논의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 경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을 언급함<sup>214)</sup>
  - ▶ 이후 OECD는 2019년 1월 23일 현재까지 디지털경제 태스크포스(TFDE)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발표함<sup>215)</sup>
    - 두 가지 과세방안은 과세권 배분 및 고정사업장 규정의 개정, 과세회피방지안 제정임
- 본 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과세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제1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발간 배경 및 개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제2장에서는 첫 번째 과세방안(Pillar 1)인 과세권 배분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고정사업장(nexus) 규정의 내용과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함
  - ▶ 제3장에서는 두 번째 과세방안(Pillar 2)인 과세회피방지규정의 내용과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함
  - ▶ 제4장에서는 각 과세방안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제5장에서는 후속작업에 대해 설명함

212) 보고서명은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임

213) OECD, <https://www.oecd.org/tax/beps/programme-of-work-to-develop-a-consensus-solution-to-the-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검색일자: 2019. 6. 25

2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4호, 2018

215)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Policy Note,” 2019. 1. 23, <https://www.oecd.org/tax/beps/policy-note-beps-inclusive-framework-addressing-tax-challenges-digitalisation.pdf>, 검색일자: 2019. 6. 25

1) 과세권배분 및 디지털경제의 고정사업장 규정(Pillar 1)<sup>216)</sup>

가) 과세권 배분 규정(new profit allocation rule)

□ 서비스 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하고자 하며, 아래의 세 가지 배분방법을 제시함

- ▶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Modified Residual Profit Split Method: MRPS)
- ▶ 부분할당방법(fractional apportionment method)
- ▶ 지출액 기반 배분방법(distribution-based approaches)

□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MRPS)은 사용자가 소재한 과세당국에 다국적 기업의 비일상적수익(non-routine profit)을 배분하는 것으로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됨

- ▶ 1단계: 배분 대상 총수익(total profit)을 결정
- ▶ 2단계: 이전가격 규정 또는 기타 단순한 규정을 통해 일상적 수익(routine profit)을 차감
- ▶ 3단계: 이전가격 규정 또는 기타 단순규정을 통해 비일상적 수익 중 사용자 소재국에 배분할 비율 결정
- ▶ 4단계: 할당 기준(allocation key)에 따라 과세 대상 비일상적 수익을 사용자가 소재한 과세당국에 배분

□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은 기존의 이전가격 규정을 준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총수익의 계산방법, 일상적 수익 및 비일상적 수익의 구분방법, 비일상적 수익 할당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 총수익 계산 시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이 적합한지 아니면 세전이익과 같은 기타 총수익의 대응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비일상적 수익 구분 시 기존의 이전가격규정을 활용하는 방법과 대응치로 비일상적 수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장단점 및 적절한 대응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부분할당방법은 일상적 수익과 비일상적 수익 구분 없이 다국적 기업의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

216) OECD,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chapter 2, 2019. 5. 29

논의할 예정임

- ▶ 1단계: 과세권 배분 대상 수익을 결정
    - 이전가격규정에 따른 수익금액 또는 다국적 기업의 전체 수익률을 적용한 수익금액 중 적절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2단계: 적절한 할당 기준 선택
    - 종업원 수, 자산, 매출액, 사용자와 같은 요인으로 수익을 할당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할당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3단계: 소비자가 소재하는 과세당국에 수익 배분
- 지출액 기반 배분방법은 사용자가 소재한 과세당국에서 발생한 마케팅, 분배, 사용자 활동에 따라 수익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 ▶ 조세행정 간소화 목적으로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 마케팅, 분배, 사용자 관련 활동에 대한 기준 수익금액을 정해야 하며, 기준 수익금액을 다국적 기업의 수익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나) 디지털경제의 고정사업장(nexus) 규정

- 새로운 원격과세장소(remote taxable presence)의 개념을 성립하고, 원격과세장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할 것임
- 디지털경제에서의 고정사업장 규정(nexus rule)은 OECD 모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 규정” 및 제7조 “사업소득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디지털경제 고정사업장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임

2)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안(Pillar 2)<sup>217)</sup>

-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행위로 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하는 BEPS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과세회피방지안(global anti-base erosion proposal: GloBE)을 규정하고자 함

217) OECD,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chapter 3, 2019. 5. 29

- OECD는 아래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가지 방안 모두 최소 세율에 미달하여 과세되는 경우 최소 세율만큼 과세하는 것임

  - ▶ 소득 산입 규정(income inclusion rule)
  - ▶ 세원잠식세(tax on base eroding payments)
  
- 소득 산입 규정은 만약 외국지사 또는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유효세율이 최소 세율 이하인 경우 해당소득에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기존의 CFC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임

  - ▶ 이 방안은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세율에 최저한을 정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일치함
  - ▶ 소득 산입 규정 설계에 있어 최소 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각 국가별 법인세율의 일정 비율이 아닌 고정 비율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세원잠식세는 관계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최소 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국가에서 지급액 공제를 부인하거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임

  - ▶ 위의 방안을 보완하여 최소 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3) 경제적 분석 및 향후 진행 계획<sup>218)</sup>

- 각 과세방안이 납세자 및 정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세수분배효과, 투자·혁신·성장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각 제안사항의 도입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

  - ▶ 현재 OECD는 각 방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분석결과를 BEPS 참여국과 공유할 예정임
  
- OECD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20년 말까지 최종 과세안을 발표할 예정임

  - ▶ 이번에 발표한 과세방안을 기반으로 BEPS 참여국의 합의를 위한 최종 과세방안을 2020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며, 2020년 말까지 최종 합의된 디지털 경제 과세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218) OECD,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chapter 4, 5, 2019. 5. 29

## 2 EU

### 가. 조세 비협조국가 명단(EU리스트) 업데이트

[조세동향 19-03호]

- 2019년 3월 12일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를 담은 EU리스트(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sup>219)</sup>

  - ▶ 이사회는 조세 투명성, 공평 과세, BEPS 방지 조치 이행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비협조 국가를 지정하며, 2017년 12월 최초로 EU리스트를 발표한 이후 매해 1회 이상 해당 국가리스트를 업데이트함
  
- 이번 발표에서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마셜아일랜드,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바누아트 총 10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EU리스트에 존재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임

  - ▶ 동 국가들은 특정 기한까지 이사회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비협조 국가로 추가 지정되었음
  - ▶ 이전까지 발표된 조세 비협조 국가 EU리스트의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괌,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임
  
- 이사회는 EU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 유럽투자기금에 대한 혜택 규제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EU리스트 국가와 관계된 납세자에 대한 감사 증가 등 EU 회원국 내 행정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함
  
-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아 최초의 EU리스트에 포함되었으나, 해당 제도를 폐지하여 금번 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sup>220)</sup>

219)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19. 3. 28

220)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7310&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7310&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9. 3. 26

나.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대비 완료 성명 발표

[조세동향 19-03회]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영국이 다가오는 4월 12일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날 경우인 노딜(no-deal) 상황에 대비한 준비 절차를 완료했다는 성명을 발표함<sup>221)</sup>

- ▶ 3월 21일 EU 27개국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브렉시트 기한 연기에 합의함
- ▶ 영국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이 연기됨
  -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4월 12일 이전까지 아무런 조건 협의 없이 EU를 탈퇴하거나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기한의 장기 연기를 선택하여야 함<sup>222)</sup>
- ▶ 노딜 브렉시트 경우에는 영국은 지체 없이 제3국가가 되며, 영국에서 모든 EU법은 효력이 즉시 상실됨
- ▶ 또한 탈퇴를 위한 과도기 조건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세관, 소비세, 부가세 지침 등을 발표함<sup>223)</sup>

- ▶ 노딜 브렉시트 시 관련 세관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운송사업자 및 수출사업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음
  - EU27국<sup>224)</sup> 입장에서 영국은 지체 없이 제3국가가 되며, 영국과 거래를 원하는 EU27국 내 사업자는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영국에서 승인된 세관 결정은 더 이상 EU27국에 유효하지 않음
  - 영국은 더 이상 EU(EU와 협정을 맺은 제3국가 포함)와의 관계에서 무역특혜협정의 당사자가 아님

221) European Co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813\\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1813_en.htm), 검색일자: 2019. 3. 28

222) 그러나 EU는 브렉시트 장기 연기는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BBC,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7776512>, 검색일자: 2019. 4. 2

223)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3-21\\_e2\\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3-21_e2_1.html), 검색일자: 2019. 3. 25

224)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을 말함

- 영국과 EU27국 내 영토에 반입/반출되는 모든 재화는 세관 절차가 필요함
- ▶ 노딜 브렉시트 시 EU27국 내 재화이동 시 세관에 제출되는 개별소비세(excise tax) 문서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승인된 서류는 제3국 문서로 취급됨을 밝혔음
- ▶ 부가세 지침에는 현행 MOSS제도<sup>225)</sup>하에서 영국 및 EU27국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 협조 사항 등을 다룸
- 브렉시트 시점에서 이동 중인 재화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이전에 운송이 시작되었다면 재화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 브렉시트 이전에 수출신고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순히 EU27국에서 영국으로 이동된 재화가 브렉시트 이후 반환된 경우에는 부가세 지침의 재수입(re-importation)규정<sup>226)</sup>을 적용할 것이라 밝힘
- 브렉시트 이후 6개월 이내에 영국에서부터 EU27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자의 재산과 관련한 부가세는 면제됨(다만, 이전 거주 시 소유권을 갖고 사용되었던 물건에 한함)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또는 EU27국에 등록되지 않은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전자포털을 이용할 수 없음
- 브렉시트 이전에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해당 국가로 직접 제출해야 함

□ 이 외에도 EU 27개국은 각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대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sup>227)</sup>

## 다. EU 내 이익분할법 적용에 관한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9-04호]

□ EU 이전가격 포럼(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은 2019년 3월 '이전가격 관련 EU 내 이익분할법에 대한 적용 보고서(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fit split method:

225) MOSS는 EU 회원국에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 제도로 2015년에 시행됨

226) 부가세지침 Article 143(1)(e). 다만, 이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법에 명시된 기한까지 재화가 불변된 상태로 재수입되었음을 밝혀야 함

227) EU 27개국의 브렉시트 준비 상황은 [https://ec.europa.eu/info/brexit/brexit-preparedness/national-brexit-information-member-states\\_en](https://ec.europa.eu/info/brexit/brexit-preparedness/national-brexit-information-member-states_en)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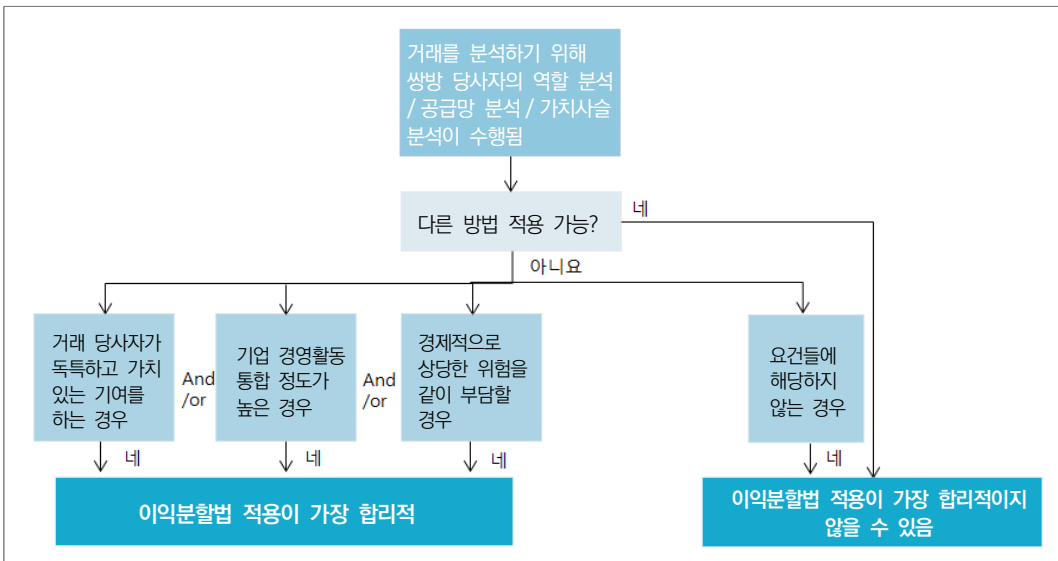
PSM)를 발표함<sup>228)</sup>

- ▶ BEPS Action 10에서는, 그룹 내부 용역 등과 같이 제3자 간에서 주로 발생하지 않는 거래의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이익분할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을 보완하도록 하였음
- ▶ 동 보고서에서는 OECD 이익분할법 적용 수정지침(2018년 6월)<sup>229)</sup>을 바탕으로 실무상 EU 내 정상가격 산출 시 이익분할법이 적용되는 내용을 다룸

□ OECD 수정지침에서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 시 이익분할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시 및 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화함

- ▶ OECD 수정지침에 따라 이익분할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① 거래 당사자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경우 및/또는 ② 기업 경영활동 통합 정도가 높은 경우 및/또는 ③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같이 부담한 경우를 말함

[그림 IV-2] 이익분할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자료: EU, The application of the profit split method within the EU, p. 16

228)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eu-joint-transfer-pricing-forum-releases-report-on-application-of-profit-split-method-within-the-eu-and-provides-summary-of-achievements-of-present-mandate>, European Union 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 publishes documents of 54th meeting(29 Mar. 2019), News IBFD, 검색일자: 2019. 4. 22

229) 2018년 6월에 OECD는 이익분할법 적용 수정지침을 통해 이익분할법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익분할법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음. 단, 지침에서는 이익분할법이 다른 이전가격 방법들과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이 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는 유지하였음

□ EU 이전가격 포럼 회원국을 조사하여 실무상 이익분할법 배부 기준 및 적용 상황을 설명함

- ▶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배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익 배분이 가능하다면, 해당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표 IV-2〉 EU 이전가격 포럼 자료에 의한 이익분할법 배부 기준 및 적용 상황

구분	직접 배분 기준	적용 상황
인적 (people)	핵심 가치창출 요인인 인원에 대한 보수	가치창출이 해당 인력 및 인원의 지식과 기술에 의해 주도될 때
	핵심 창출 요인인 인원 수	
비용 (costs)	운영비용	가치창출이 수행하는 집단의 활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때
	매출원가	가치창출이 생산활동에 의해 주도될 때
	마케팅 비용	가치창출이 마케팅 활동에 의해 주도될 때
	브랜드 개발 비용	가치창출이 브랜드에 의해 주도될 때
	R&D 비용	두 개 이상의 실체가 무형자산 개발을 함께 협력할 때
매출 /거래량 (sales/ volume)	매출액	매출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룹 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낼 때
	거래량	판매/유통/마케팅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 가능
자산 (assets)	핵심 사업용 자산의 가치 (무형자산 포함)	보유자산, 임대자산 또는 특허권 자산가치를 고려해야 함
	운동자산	외부 시장 거래/평가 가격에 자산의 가치가 결정될 때
	로열티 비율	다른 무형자산들이 가치창출에 기여할 때
	프랜차이즈 약정	가치창출을 위해 서로 다른 무형자산들이 서비스와 함께 제공 될 때
기타 (other)	가치사슬 및 역할 분석에 근거한 가중치	역할/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통합된 사업을 고유의 가치창출 활동으로 세부화함
	외부 벤치마크	가치사슬의 다른 단계를 수행하는 외부 비교 기업을 참고함으로써, 외부 또는 시장가치를 제공함
	헷지 펀드 모델	한 당사자가 자본 및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고 다른 당사자가 가치 있는 투자/거래 노하우와 일상적인 결정을 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사용됨

자료: EU, The application of the profit split method within the EU, pp. 17-21

라. 조세 비협조 국가 명단(EU리스트) 조정 발표

[조세동향 19-05회]

- 2019년 5월 17일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 명단인 EU리스트에서 아루바, 바베이도스, 버뮤다를 제외하기로 함<sup>230)</sup>

  - ▶ 이사회는 조세 투명성, 공평 과세, BEPS 방지조치 이행 세 가지 기준을 근거로 비협조 국가를 지정하며, 2017년 12월 최초로 EU리스트를 발표한 이 후 매회 1회 이상 해당 국가 리스트를 업데이트함
  
- 이번 결정으로 EU리스트에 존재하게 되는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괌, 마셜 아일랜드, 오만,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레이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누아트로 총 12개국임
  
- 이사회는 EU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 유럽투자기금에 대한 혜택 규제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EU리스트 국가와 관계된 납세자에 대한 감사 증가 등 EU 회원국 내에서의 행정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함

230)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5/17/taxation-aruba-barbados-and-bermuda-removed-from-the-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19. 5. 24

# V 기타

## 1 칠레 - 한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천징수규정 발표

[조세동향 19-05호]

- 칠레 국세청은 2019년 4월 17일 한·칠레 조세조약상 한국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의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ruling 1052)을 발표함<sup>231)</sup>
- 일본·칠레 조세조약(2016)이 체결됨에 따라 최혜국 규정 조건<sup>232)</sup>으로 인해 한국의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4%, 그 외의 경우에는 10%로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었음

  - ▶ 일본·칠레 조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한국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10%, 그 외의 경우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았음
  - 칠레법에 따른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은 35%임
- 칠레 국세청은 집합투자기구에 지급한 이자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인 은행이 관련 대출금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4%로 원천징수될 수 있음을 밝혔음

  - ▶ 단, 4%로 원천징수되기 위해서는 과소자본규정(thin capitalization rules) 등을 충족해야 함
  - ▶ 또한 이자의 수취인이 한·칠레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231) IBFD, Chile; Korea(Rep.) Treaty between Chile and Korea(Rep.) - tax treatment of interest paid to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larified (29 Apr. 2019), News IBFD, 검색일자: 2019. 5. 20

232) 최혜국 대우 규정(most-favoured nation clause)이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 간의 협정에 따라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규정을 말함. 관세용어사전,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dic/DictionaryView.do?sessionId=qh4JTpVby1TXBQyVRLw9LCSWNLFwJJ7YyHrsyJg5QKNTmVn1h4Yp!490260468?layoutMenuNo=14544&pageUnit=10&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Word=M&type=3&vocalId=2932>, 검색일자: 2019. 5. 23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9년 제1호

---

2019년 7월 30일 인쇄

2019년 7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유 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